2018
아동학대**주요통계**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18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아동학대주요통계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2541-01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18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541-01

2018
아 동 학 대
주 요 통 계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18

보건복지부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목 차

제1장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제1절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11
1. 신고접수 11
1) 신고접수 11
2) 시도별 신고접수 11
2. 신고자 유형 12
1) 신고자 유형 12
2) 시도별 신고자 유형 14

제2절 아동학대 사례판단 16
1. 사례판단 16
1) 사례판단 결과 16
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5개년) 16
2. 피해아동 발견율 17

제3절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9
1. 인구사회학적 요인 19
1) 피해아동 19
가. 피해아동 성별 19
나. 피해아동 연령 19
다. 피해아동 가족유형 21
2) 학대행위자 21
가. 학대행위자 성별 21
나. 학대행위자 연령 22
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3
2.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25
1) 아동학대 발생장소 25
3. 아동학대사례 유형 26
1) 아동학대사례 유형 26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 26
2) 아동학대사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27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27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27
다.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7
4. 아동학대사례 상황 28

목 차

1) 피해아동 상황 28
가. 피해아동 전체 사례종결 현황 28
나.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피해아동 보호 현황 29
2) 학대행위자 상황 31
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치 현황 31
나.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 35
5. 서비스 제공 현황 40
6. 재학대 사례 42
1) 재학대 사례의 현황 42
2)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42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42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43
3)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43
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43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44
5)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 유형 46
가.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46
6) 재학대 사례 상황 47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상황 47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상황 47

제4절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48
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48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48
3)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51
4)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52
5) 연도별 아동학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53
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53
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55

제2장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
1. 아동학대 사망사례 현황 61
1) 아동학대 사망사례 현황 61
2.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피해아동 61
1)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일반적 특성 61
가. 사망사례 피해아동 성별 61
나. 사망사례 피해아동 연령 61

목 차

다. 사망사례 피해아동 교육기관 62
2)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환경적 특성 62
가. 사망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62
나. 사망사례 피해아동 가구소득 63
다. 사망사례 피해아동 국적 및 다문화가족 여부 63
3.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학대행위자 64
1)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의 일반적 특성 64
가.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64
나.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64
다.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최종학력 65
라.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65
2)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의 환경적 특성 66
가.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가구소득 66
나.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국적 및 다문화가족 여부 66
4. 아동학대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67
1)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동거여부 67
2)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67
5. 아동학대 사망사례 발생현황 68
1) 사망사례 지역별 발생현황 68
2) 사망사례 신고자 유형 68
6. 사망사례의 아동학대 유형 69
7. 아동학대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재판 결과 69
1)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재판 결과 69

부 록

1. 용어 설명 73

2.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78

목 차

| 표목차 |

제1장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제1절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표 1-1-1〉 신고접수 건수 11
〈표 1-1-2〉 시도별 신고접수 건수 11
〈표 1-1-3〉 신고자 유형 12
〈표 1-1-4〉 시도별 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14
〈표 1-1-5〉 시도별 비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15

제2절 아동학대 사례판단

〈표 1-2-1〉 사례판단 결과 16
〈표 1-2-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16
〈표 1-2-3〉 피해아동 발견율 17

제3절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표 1-3-1〉 피해아동 성별 19
〈표 1-3-2〉 피해아동 연령 19
〈표 1-3-3〉 피해아동 가족유형 21
〈표 1-3-4〉 학대행위자 성별 21
〈표 1-3-5〉 학대행위자 연령 22
〈표 1-3-6〉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3
〈표 1-3-7〉 아동학대 발생장소 25
〈표 1-3-8〉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26
〈표 1-3-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27
〈표 1-3-1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27
〈표 1-3-1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8
〈표 1-3-12〉 피해아동 전체 사례종결 현황 28
〈표 1-3-13〉 피해아동 상황 28
〈표 1-3-14〉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현황 29
〈표 1-3-15〉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현황 29
〈표 1-3-16〉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30
〈표 1-3-17〉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 거주지 30
〈표 1-3-18〉 학대행위자 상황 31
〈표 1-3-1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상황 31
〈표 1-3-20〉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비율 31
〈표 1-3-21〉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32
〈표 1-3-22〉 임시조치 결정 현황 33
〈표 1-3-23〉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34
〈표 1-3-24〉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 36
〈표 1-3-25〉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 36
〈표 1-3-26〉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39
〈표 1-3-27〉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40
〈표 1-3-28〉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 서비스 제공 실적 40

목 차

〈표 1-3-29〉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중복포함) 41
〈표 1-3-30〉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3개년) 42
〈표 1-3-31〉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42
〈표 1-3-3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43
〈표 1-3-3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43
〈표 1-3-3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44
〈표 1-3-35〉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45
〈표 1-3-36〉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46
〈표 1-3-37〉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상황 47
〈표 1-3-38〉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상황 47

제4절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표 1-4-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48
〈표 1-4-2〉 연도별 신고자 유형 49
〈표 1-4-3〉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51
〈표 1-4-4〉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52
〈표 1-4-5〉 연도별 아동학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53
〈표 1-4-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54
〈표 1-4-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56

제2장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

〈표 2-1〉 아동학대 사망사례 발생 현황 61
〈표 2-2〉 사망사례 피해아동 성별 61
〈표 2-3〉 사망사례 피해아동 연령 62
〈표 2-4〉 사망사례 피해아동 교육기관 62
〈표 2-5〉 사망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63
〈표 2-6〉 사망사례 피해아동 가구소득 63
〈표 2-7〉 사망사례 피해아동 국적 및 다문화가족 여부 64
〈표 2-8〉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64
〈표 2-9〉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64
〈표 2-10〉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최종학력 65
〈표 2-11〉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65
〈표 2-12〉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가구소득 66
〈표 2-13〉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국적 및 다문화가족 여부 66
〈표 2-14〉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동거여부 67
〈표 2-15〉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67
〈표 2-16〉 사망사례 지역별 발생현황 68
〈표 2-17〉 사망사례 신고자 유형 68
〈표 2-18〉 사망사례의 아동학대 유형 69
〈표 2-19〉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재판 결과 69

부록

목 차

| 그림목차 |

제1장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제1절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그림 1-1-1] 신고접수 건수 11
[그림 1-1-2] 신고자 유형 13

제2절 아동학대 사례판단

[그림 1-2-1] 사례판단 결과 16
[그림 1-2-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17

제3절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그림 1-3-1] 피해아동 성별 19
[그림 1-3-2] 피해아동 연령 20
[그림 1-3-3] 피해아동 가족유형 21
[그림 1-3-4] 학대행위자 성별 22
[그림 1-3-5] 학대행위자 연령 22
[그림 1-3-6]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4
[그림 1-3-7]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26
[그림 1-3-8]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30
[그림 1-3-9] 피해아동 응급조치 세부 내용 32
[그림 1-3-10] 임시조치 결정 세부 내용 34
[그림 1-3-11]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세부 내용 35
[그림 1-3-1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42
[그림 1-3-13]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43
[그림 1-3-1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44
[그림 1-3-15]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44
[그림 1-3-1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46
[그림 1-3-17]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46

제4절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그림 1-4-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48
[그림 1-4-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52
[그림 1-4-3]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52
[그림 1-4-4] 연도별 아동학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53
[그림 1-4-5]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55
[그림 1-4-6]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57

제2장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

부록

제1장

아동학대 현황

제1절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제2절 아동학대 사례판단
제3절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제4절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제1장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제1절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1. 신고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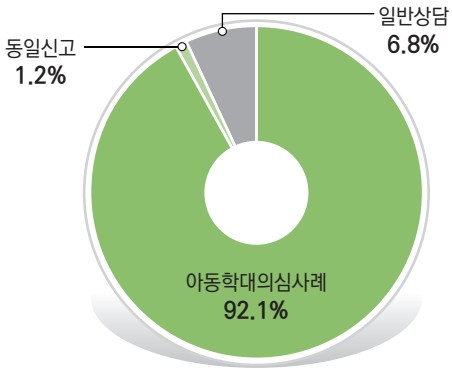
1) 신고접수

2018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계된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총 36,417건으로 전년* 대비 약 6.6% 증가했다. 이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는 1,187건, 아동학대의심사례는 32,345건으로 총 아동학대의심사례는 전체 신고접수의 92.1%로 나타났다. 이외 동일신고는 420건(1.2%), 일반상담은 2,464건(6.8%)이었다.

〈표 1-1-1〉 신고접수 건수

(단위:건, %)

아동학대의심사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해외발생 사례	계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소계				
1,187	32,345	33,532	420	2,464	1	36,417
(3.3)	(88.8)	(92.1)	(1.2)	(6.8)	(0.0)	(100.0)



[그림 1-1-1] 신고접수 건수

2) 시도별 신고접수

시도별 신고접수 건수의 경우, 경기 8,387건(25.0%), 서울 3,399건(10.1%) 순으로 높았으며, 세종 153건(0.5%), 제주 607건(1.8%)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1-1-2〉 시도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 %)

시도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서울	98	(8.3)	3,301	(10.2)	3,399	(10.1)
부산	33	(2.8)	2,174	(6.7)	2,207	(6.6)

* 2017년 기준 전체 신고접수건수는 34,169건이었음.

시도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대구	59	(5.0)	1,513	(4.7)	1,572	(4.7)
인천	25	(2.1)	2,081	(6.4)	2,106	(6.3)
광주	37	(3.1)	1,102	(3.4)	1,139	(3.4)
대전	38	(3.2)	1,095	(3.4)	1,133	(3.4)
울산	11	(0.9)	850	(2.6)	861	(2.6)
경기	346	(29.1)	8,041	(24.9)	8,387	(25.0)
강원	59	(5.0)	1,392	(4.3)	1,451	(4.3)
충북	103	(8.7)	991	(3.1)	1,094	(3.3)
충남	62	(5.2)	1,708	(5.3)	1,770	(5.3)
전북	88	(7.4)	1,845	(5.7)	1,933	(5.8)
전남	58	(4.9)	2,020	(6.2)	2,078	(6.2)
경북	92	(7.8)	2,258	(7.0)	2,350	(7.0)
경남	59	(5.0)	1,233	(3.8)	1,292	(3.9)
제주	14	(1.2)	593	(1.8)	607	(1.8)
세종	5	(0.4)	148	(0.5)	153	(0.5)
총계	1,187	(100.0)	32,345	(100.0)	33,532	(100.0)

2. 신고자 유형

1) 신고자 유형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접수된 33,532건에 대한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았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9,151건(27.3%)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초·중·고교 직원이 6,406건(19.1%), 아동복지시설종사자 411건(1.2%), 의료인·의료기사 325건(1.0%) 순으로 높게 보고되었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접수 건수는 24,381건(72.7%)이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7,756건(23.1%), 부모가 6,089건(18.2%), 아동본인 4,512건(13.5%), 이웃·친구 1,859건(5.5%)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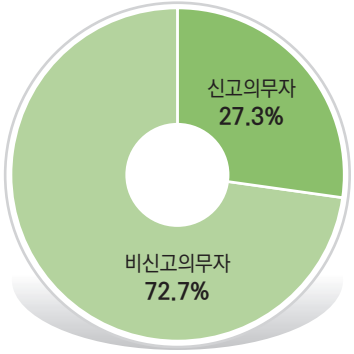
〈표 1-1-3〉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초·중·고교 직원	6,406	(19.1)	아동본인	4,512	(13.5)
의료인·의료기사	325	(1.0)	부모	6,089	(18.2)
아동복지시설종사자	411	(1.2)	형제,자매	403	(1.2)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56	(0.2)	친인척	607	(1.8)
보육교직원	213	(0.6)	이웃·친구	1,859	(5.5)
유치원교직원,강사	115	(0.3)	경찰	406	(1.2)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학원강사	18	(0.1)	종교인	18	(0.1)
소방구급대원	24	(0.1)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933	(2.8)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8	(0.0)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7,756	(23.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14	(0.0)	의료사회복지사	66	(0.2)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283	(0.8)	낯선사람	443	(1.3)
사회복지시설종사자	211	(0.6)	익명	228	(0.7)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25	(0.1)	기타	1,027	(3.1)
아동복지전담공무원	72	(0.2)	법원	34	(0.1)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31	(0.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52	(0.2)			
정신건강복지센터종사자	48	(0.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종사자	168	(0.5)			
응급구조사	0	(0.0)			
청소년시설,단체종사자	276	(0.8)			
청소년보호센터,청소년재활센터종사자	121	(0.4)			
아이돌보미	11	(0.0)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255	(0.8)			
육아종합지원센터종사자	4	(0.0)			
입양기관종사자	4	(0.0)			
소계	9,151	(27.3)	소계	24,381	(72.7)
계			33,532(100.0)		

※ 기존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7항에 규정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삭제로 인해 기존 신고의무자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항목을 삭제하고 비신고의무자의 사회복지관련종사자 항목에 통합하였음.



[그림 1-1-2] 신고자 유형

2) 시도별 신고자 유형

〈표 1-1-4〉 시도별 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

시도 / 신고자 유형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총계
초·중·고교 직원	701	663	225	336	148	178	136	1,607	287	163	455	367	511	302	257	42	28	6,406
의료인·의료기사	41	13	14	24	14	18	9	97	5	11	15	9	10	23	19	2	1	32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4	23	38	9	26	10	7	85	9	11	37	30	42	21	12	17	0	411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7	11	2	3	2	0	0	16	3	1	0	4	0	1	6	0	0	56
보육교직원	20	5	5	21	0	21	3	61	8	4	10	14	10	19	7	4	1	213
유치원교직원·강사	10	13	1	11	1	5	2	25	3	7	6	11	6	8	2	1	3	115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2	2	3	2	0	0	0	4	0	3	1	1	0	0	0	0	0	18
소방구급대원	6	0	6	6	0	1	0	0	1	1	1	0	0	2	0	0	0	24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종사자	0	0	1	0	1	0	0	1	0	0	0	1	0	0	4	0	0	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4	5	0	0	1	0	0	2	0	0	0	0	0	2	0	0	0	14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5	7	11	4	4	11	6	38	8	10	12	58	31	45	28	3	2	283
사회복지시설종사자	30	27	6	6	3	1	3	35	17	13	15	22	12	9	7	5	0	211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0	2	5	4	3	0	1	2	0	0	1	5	0	0	2	0	0	25
아동복지전담공무원	14	7	1	0	11	4	1	13	7	0	2	0	1	6	2	0	3	72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2	1	5	3	3	0	0	2	4	0	1	2	1	5	1	1	0	3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1	2	3	1	2	0	1	12	2	3	1	0	9	9	4	0	2	52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1	3	1	3	0	0	1	14	0	13	2	4	5	0	1	0	0	48
성폭력피해보호시설종사자·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	6	7	8	0	11	0	1	13	12	6	3	13	22	63	3	0	0	168
응급구조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시도 / 신고자 유형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총계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25	46	23	16	3	14	8	54	19	2	5	22	7	11	20	1	0	276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18	32	10	2	1	4	12	18	0	0	10	5	3	6	0	0	0	121
아이돌보미	0	1	0	1	1	0	0	2	0	0	0	5	0	0	1	0	0	11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9	4	6	15	2	0	2	48	15	21	23	52	10	32	15	0	1	255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1	0	0	0	0	0	0	1	2	0	0	0	0	0	0	0	0	4
입양기관 종사자	0	1	1	0	0	0	0	1	0	0	0	0	0	0	1	0	0	4
소 계	937	875	375	467	237	267	193	2,151	402	269	600	625	680	564	392	76	41	9,151

※기존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7항에 규정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삭제로 인해 기존 신고의무자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항목을 삭제하고 비신고의무자의 사회복지관련종사자 항목에 통합하였음.

〈표 1-1-5〉 시도별 비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시도 / 비신고자 유형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총계
아동 본인	456	220	235	334	147	272	98	1,217	126	130	274	152	275	254	133	145	44	4,512
부모	860	362	316	362	182	217	133	1,607	188	147	242	260	320	469	245	147	32	6,089
형제자매	51	16	23	36	8	22	4	101	6	12	20	29	26	18	12	15	4	403
친인척	66	22	22	33	33	35	14	132	19	21	25	52	36	47	31	15	4	607
이웃친구	211	90	73	222	58	91	37	525	31	55	68	104	71	97	86	30	10	1,859
경찰	25	10	8	52	6	5	3	177	10	9	24	17	21	26	6	5	2	406
종교인	7	0	2	2	0	0	0	3	1	1	1	1	0	0	0	0	0	18
사회복지관련종사자	90	48	39	59	34	65	14	202	39	38	56	84	47	81	32	5	0	933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	523	362	406	398	372	53	322	1,819	572	365	375	543	528	694	301	114	9	7,756
의료사회복지사	5	0	0	5	5	1	6	23	10	3	4	0	0	2	1	1	0	66
낯선사람	54	26	27	20	19	17	14	130	7	4	22	14	28	25	13	20	3	443
익명	20	14	3	6	7	48	3	40	16	5	6	12	10	20	3	12	3	228
법원	0	8	2	1	1	0	7	7	1	4	0	2	0	0	1	0	0	34
기타	94	154	41	109	30	40	13	253	23	31	53	38	36	53	36	22	1	1,027
소계	2,462	1,332	1,197	1,639	902	866	668	6,236	1,049	825	1,170	1,308	1,398	1,786	900	531	112	24,381

제2절 아동학대 사례판단

1. 사례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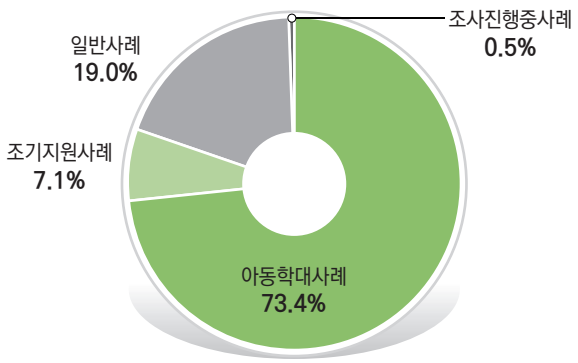
1) 사례판단 결과

2018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사례판단의 경우, 총 아동학대의심사례인 33,532건 중 아동학대 사례는 24,604건(73.4%), 조기지원사례 2,392건(7.1%), 일반사례 6,368건(19.0%)으로 나타났다

〈표 1-2-1〉 사례판단 결과

(단위 : 건, %)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조사진행중사례*	계
24,604	2,392	6,368	168	33,532
(73.4)	(7.1)	(19.0)	(0.5)	(100.0)



[그림 1-2-1] 사례판단 결과

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5개년)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2016년 전년 대비 약 50% 이상 증가하였고 2018년의 경우 전년 대비 아동학대사례 증가율이 10.0%이었다. 기관수의 경우 2014년 51개소에서 2018년 62개소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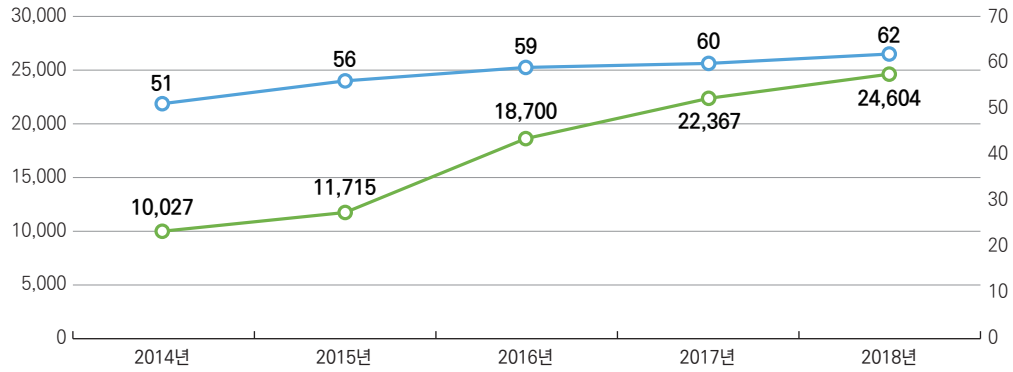
〈표 1-2-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단위 : 건, %, 개소)

구분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아동학대사례	건수	10,027	11,715	18,700	22,367	24,604
	증가율	47.5	16.8	59.6	19.6	10.0

* '조사진행중사례'란 2018년 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의심내용의 학대여부 판단에 필요한 근거 및 증거확보를 위해 현장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를 뜻함(2019년 2월 28일 기준).

구분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수	51	56	59	60	62
	증가 기관수	1	5	4	1	2



[그림 1-2-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 피해아동 발견율

전국 평균 피해아동 발견율은 2.98‰로, 전년 대비 0.34‰p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남도 6.15‰, 전라북도 5.44‰, 강원도 5.35‰ 순으로 높았다. 반면에 세종특별자치시 0.90‰, 서울특별시 1.64‰, 경상남도 1.97‰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1-2-3〉 피해아동 발견율

(단위 : 명, 개소, 명, 건, ‰)

지 역	추계아동인구* (만 0~17세)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수	기관당 아동수	아동학대사례	피해아동 발견율 (인구 천 명 당)
서울특별시	1,343,716	9	149,302	2,210	1.64
부산광역시	476,141	4	119,035	1,612	3.39
대구광역시	387,186	3	129,062	1,168	3.02
인천광역시	481,627	3	160,542	1,167	2.42
광주광역시	266,625	2	133,313	962	3.61
대전광역시	256,898	1	256,898	643	2.50
울산광역시	205,506	2	102,753	734	3.57
경기도	2,261,150	12	188,429	6,076	2.69
강원도	227,748	4	56,937	1,219	5.35
충청북도	258,187	3	86,062	846	3.28
충청남도	358,282	3	119,427	1,321	3.69

지 역	추계아동인구* (만 0~17세)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수	기관당 아동수	아동학대사례	피해아동 발견율 (인구 천 명 당)
전라북도	290,388	3	96,796	1,580	5.44
전라남도	280,188	3	93,396	1,723	6.15
경상북도	398,514	4	99,629	1,822	4.57
경상남도	566,993	3	188,998	1,118	1.97
제주특별자치도	120,437	2	60,219	335	2.78
세종특별자치시	75,904	1	75,904	68	0.90
계	8,255,490	62	133,153	24,604	2.98

※ 피해아동 발견율 :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를 의미하며, 통계청「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시도」 자료를 기반으로 2018년 피해아동 발견율을 산출하였음.

* 통계청(2018).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시도, http://www.kosis.kr.

제3절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 인구사회학적 요인

1) 피해아동

가. 피해아동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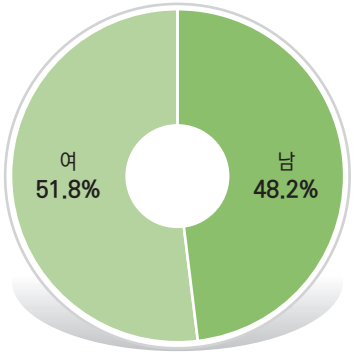
2018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 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24,604건 중 여아가 12,737건(51.8%), 남아가 11,867건(48.2%)으로 여아가 약 3.6%p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1〉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명, %)

구분	남아		여아		계	
건수(비율)	11,867	(48.2)	12,737	(51.8)	24,604	(100.0)
명수(비율)	9,707	(48.5)	10,311	(51.5)	20,018	(100.0)

※ 아동학대사례 24,604건에 동일한 아동이 한번 이상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이거나 혹은 동일한 아동이 한 명 이상의 학대행위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해아동 특성 값의 건수와 명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그림 1-3-1] 피해아동 성별

나. 피해아동 연령

피해아동의 연령의 경우,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의 2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만 10~12세가 22.1%, 만 7~9세가 17.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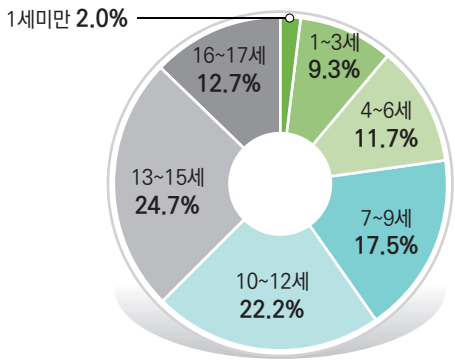
〈표 1-3-2〉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명, %)

연령(만)	건수(비율)		명수(비율)	
1세 미만	503	(2.0)	366	(1.8)
1세	524	(2.1)	395	(2.0)

연령(만)	건수(비율)		명수(비율)	
2세	827	(3.4)	617	(3.1)
3세	936	(3.8)	692	(3.5)
소계	2,287	(9.3)	2,070	(10.3)
4세	891	(3.6)	680	(3.4)
5세	864	(3.5)	674	(3.4)
6세	1,115	(4.5)	876	(4.4)
소계	2,870	(11.7)	2,230	(11.1)
7세	1,427	(5.8)	1,146	(5.7)
8세	1,330	(5.4)	1,050	(5.2)
9세	1,552	(6.3)	1,283	(6.4)
소계	4,309	(17.5)	3,479	(17.4)
10세	1,797	(7.3)	1,438	(7.2)
11세	1,807	(7.3)	1,481	(7.4)
12세	1,846	(7.5)	1,547	(7.7)
소계	5,450	(22.2)	4,466	(22.3)
13세	1,913	(7.8)	1,580	(7.9)
14세	2,265	(9.2)	1,921	(9.6)
15세	1,894	(7.7)	1,589	(7.9)
소계	6,072	(24.7)	5,090	(25.4)
16세	1,634	(6.6)	1,405	(7.0)
17세	1,479	(6.0)	1,278	(6.4)
계	24,604	(100.0)	20,018	(100.0)

※ 아동학대사례 24,604건에 동일한 아동이 한번 이상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이거나 혹은 동일한 아동이 한 명 이상의 학대행위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해아동 특성값의 건수와 명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그림 1-3-2] 피해아동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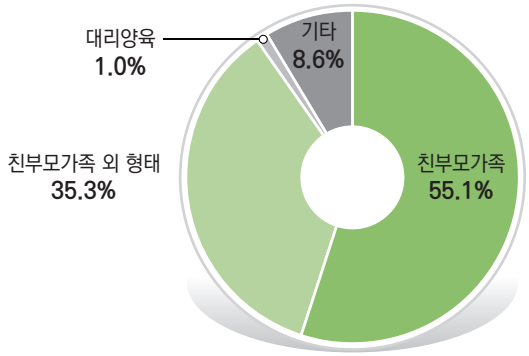
다. 피해아동 가족유형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의 경우, 친부모가족이 13,546건(55.1%), 친부모가족 외 형태는 8,682건(35.3%), 대리양육형태는 258건(1.0%), 기타는 2,118건(8.6%)순으로 나타났다.

〈표 1-3-3〉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 건, %)

친부모 가족	친부모가족 외 형태								대리양육형태				기타*	계
	부자 가정	모자 가정	미혼 부·모 가정	재혼 가정	친인척 보호	동거 (사실혼 포함)	소년 소녀 가정	소계	가정 위탁	입양 가정	시설 보호	소계		
13,546	2,997	2,865	404	1,435	483	490	8	8,682	27	44	187	258	2,118	24,604
(55.1)	(12.2)	(11.6)	(1.6)	(5.8)	(2.0)	(2.0)	(0.0)	(35.3)	(0.1)	(0.2)	(0.8)	(1.0)	(8.6)	(100.0)



[그림 1-3-3] 피해아동 가족유형

2) 학대행위자

가. 학대행위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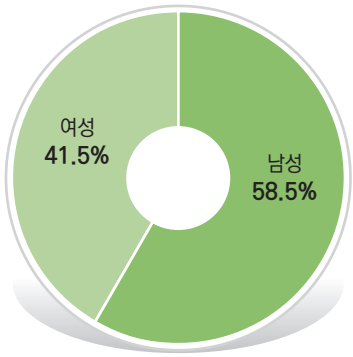
2018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24,604건을 대상으로 학대행위자의 성별을 살펴본 결과, 남성은 14,404건(58.5%), 여성은 10,200건(41.5%)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17.0%p 높게 보고되었다.

〈표 1-3-4〉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 건, %)

구분	남성		여성		계	
건수(비율)	14,404	(58.5)	10,200	(41.5)	24,604	(100.0)
명수(비율)	9,174	(58.8)	6,424	(41.2)	15,598	(100.0)

* 지인에 의한 일시적 보호, 성인이 된 형제에 의한 보호, 아동만 구성된 가정, 파악불가 등이 포함.



[그림 1-3-4] 학대행위자 성별

나. 학대행위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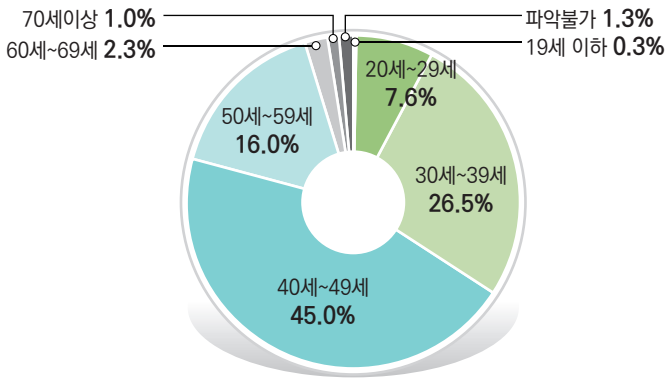
학대행위자 연령의 경우, 40대가 11,065건(4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대가 6,520건(26.5%), 50대 3,926건(16.0%), 20대 1,866건(7.6%), 60대 577건(2.3%), 70세 이상 245건(1.0%), 19세 이하 86건(0.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5〉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 건, 명, %)

연령(만)	건수(비율)		명수(비율)	
19세 이하	86	(0.3)	78	(0.5)
20대(20~29세)	1,866	(7.6)	1,147	(7.4)
30대(30~39세)	6,520	(26.5)	3,935	(25.2)
40대(40~49세)	11,065	(45.0)	7,368	(47.2)
50대(50~59세)	3,926	(16.0)	2,320	(14.9)
60대(60~69세)	577	(2.3)	395	(2.5)
70세 이상	245	(1.0)	179	(1.1)
파악불가	319	(1.3)	176	(1.1)
계	24,604	(100.0)	15,598	(100.0)

※ 학대행위자 수감 및 조사거부, 정보부족 등의 경우 학대조사를 통한 정보 취득에 제한사항 발생하여 파악불가 값이 발생할 수 있음.



[그림 1-3-5] 학대행위자 연령

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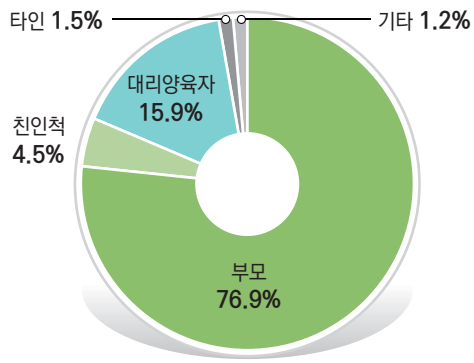
2018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24,604건을 바탕으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 18,919건(76.9%), 대리양육자 3,906건(15.9%), 친인척 1,114건(4.5%), 기타 665건(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 중 친부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10,747건(43.7%), 친모는 7,337건(29.8%), 계부 480건(2.0%), 계모 297건(1.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리양육자 중에서는 초·중·고교 직원이 2,060건(8.4%)으로 가장 높았다.

〈표 1-3-6〉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 계		건수(비율)	
부모	친부	10,747	(43.7)
	친모	7,337	(29.8)
	계부	480	(2.0)
	계모	297	(1.2)
	양부	36	(0.1)
	양모	22	(0.1)
	소계	18,919	(76.9)
친인척	친조부	147	(0.6)
	친조모	229	(0.9)
	외조부	74	(0.3)
	외조모	118	(0.5)
	친인척	352	(1.4)
	형제, 자매	194	(0.8)
	소계	1,114	(4.5)
대리양육자*	부,모의 동거인	270	(1.1)
	유치원교직원	189	(0.8)
	초·중·고교 직원	2,060	(8.4)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176	(0.7)
	보육 교직원	818	(3.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13	(1.3)
	기타시설 종사자	27	(0.1)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33	(0.1)
	위탁부	7	(0.0)
	위탁모	2	(0.0)
	베이비시터	11	(0.0)
	소계	3,906	(15.9)

관 계		건수(비율)	
타인	이웃	145	(0.6)
	낯선 사람	215	(0.9)
	소계	360	(1.5)
기타**		305	(1.2)
계		24,604	(100.0)



[그림 1-3-6]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대리양육자'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의 자녀를 하루의 일정시간 동안 대신 양육해주는 사람으로, 이진화·안선희·한유미·강희경(1999)의 연구에서 차용하였음. 이진화·안선희·한유미·강희경 (1999). 부모-대리양육자 관계 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7, 381-404.

** 이웃, 낯선사람, 부모의 지인,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 강사, 파악불가 등이 포함.

2.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1) 아동학대 발생장소

아동학대 발생장소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19,748건(8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 중 아동의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19,365건(78.7%)이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같이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각각 811건(3.3%), 187건(0.8%), 2,086건(8.5%)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복지시설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이 357건(1.5%), 기타복지시설이 60건(0.2%)으로 전체 사례 중 1.7%이었다.

〈표 1-3-7〉 아동학대 발생장소

(단위 : 건, %)

발생장소		건수(비율)	
가정 내	아동 가정 내	19,365	(78.7)
	학대행위자 가정 내	383	(1.6)
소계		19,748	(80.3)
집근처 또는 길가		352	(1.4)
친척집		143	(0.6)
이웃집		30	(0.1)
어린이집		811	(3.3)
유치원		187	(0.8)
학교		2,086	(8.5)
학원		154	(0.6)
병원		58	(0.2)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357	(1.5)
	기타복지시설	60	(0.2)
소계		417	(1.7)
숙박업소		94	(0.4)
종교시설		31	(0.1)
기타*		493	(2.0)
계		24,604	(100.0)

* 수영장, 차량 안, 상점, 노상, 파악불가 등이 포함.

3. 아동학대사례 유형

1) 아동학대사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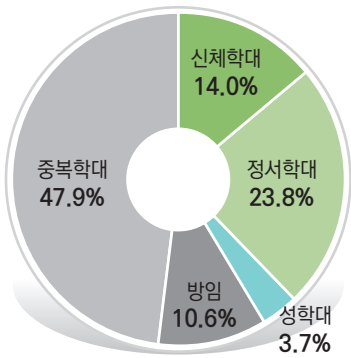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여 아동학대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중복학대가 11,792건(47.9%)으로 가장 높았다. 정서학대 5,862건(23.8%), 신체학대 3,436건(14.0%), 방임 2,604건(10.6%), 성학대 910건(3.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복학대 중 신체학대·정서학대가 9,376(38.1%)으로 가장 높았고, 정서학대·방임이 779건(3.2%),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이 683건(2.8%), 모든 학대 유형이 함께 발생한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은 11건(0.0%)이었다.

〈표 1-3-8〉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 건, %)

유형		건수(비율)	
신체학대		3,436	(14.0)
정서학대		5,862	(23.8)
성학대		910	(3.7)
방임		2,604	(10.6)
중복학대	신체학대·정서학대	9,376	(38.1)
	신체학대·성학대	63	(0.3)
	신체학대·방임	254	(1.0)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199	(0.8)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683	(2.8)
	신체학대·성학대·방임	1	(0.0)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11	(0.0)
	정서학대·성학대	422	(1.7)
	정서학대·방임	779	(3.2)
	정서학대·성학대·방임	3	(0.0)
	성학대·방임	1	(0.0)
	소계	11,792	(47.9)
계		24,604	(100.0)



[그림 1-3-7]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2) 아동학대사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에 따른 피해아동 성별, 연령,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아동학대 유형별로 피해아동 성별을 살펴본 결과, 신체학대와 방임 사례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각각 약 3.4%p, 1.0%p 높았다. 정서학대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약 4.2%p 더 높게 나타났다. 성학대 사례에서는 여아가 82.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표 1-3-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

학대유형 / 성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남	7,256	(51.7)	8,297	(47.9)	283	(17.6)	2,188	(50.5)	18,024	(48.3)
여	6,767	(48.3)	9,037	(52.1)	1,327	(82.4)	2,148	(49.5)	19,279	(51.7)
계	14,023	(100.0)	17,334	(100.0)	1,610	(100.0)	4,336	(100.0)	37,303	(100.0)

※중복포함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아동학대 유형별 피해아동의 연령을 살펴본 결과, 1세 미만을 제외한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높게 나타났다.

〈표 1-3-1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

학대유형 / 연령(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1세 미만	133	(0.9)	177	(1.0)	2	0.1	313	7.2	625	(1.7)
1~3세	930	(6.6)	1,433	(8.3)	8	0.5	770	17.8	3,141	(8.4)
4~6세	1,400	(10.0)	1,938	(11.2)	42	2.6	807	18.6	4,187	(11.2)
7~9세	2,430	(17.3)	3,052	(17.6)	134	8.3	847	19.5	6,463	(17.3)
10~12세	3,067	(21.9)	4,035	(23.3)	452	28.1	782	18.0	8,336	(22.3)
13~15세	4,042	(28.8)	4,408	(25.4)	575	35.7	581	13.4	9,606	(25.8)
16~17세	2,021	(14.4)	2,291	(13.2)	397	24.7	236	5.4	4,945	(13.3)
계	14,023	(100.0)	17,334	(100.0)	1,610	100	4,336	100.0	37,303	(100.0)

※중복포함

다.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의 경우, 성학대를 제외한 학대 유형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높았다. 특히 방임 사례에서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는 85.3%로 나타났다. 성학대의 경우에는 학대행위자가 대리양육자인 경우가 51.1%, 부모인 경우는 24.0%로 나타났다.

〈표 1-3-1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학대유형 / 관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계	
부모	11343	(80.9)	13801	(79.6)	386	24.0	3698	85.3	29228	(78.4)
친인척	725	(5.2)	743	(4.3)	95	5.9	132	3.0	1695	(4.5)
대리양육자	1702	(12.1)	2473	(14.3)	823	51.1	490	11.3	5488	(14.7)
기타	253	(1.8)	317	(1.8)	306	19.0	16	0.4	892	(2.4)
계	14023	(100.0)	17334	(100.0)	1610	100.0	4336	100.0	37303	(100.0)

※중복포함

4. 아동학대사례 상황

본 절에서는 2018년 아동학대사례로 접수된 24,604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아동의 초기조치 및 최종조치결과를 포함한 피해아동 상황,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피해아동 보호 현황, 학대행위자의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를 포함한 학대행위자 상황,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아동학대처벌법 조치 결과를 살펴보았다.

1) 피해아동 상황

피해아동의 상황은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가정복귀, 사망, 기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가. 피해아동 전체 사례종결 현황

2018년 아동학대사례 24,604건 중 당해에 종결된 사례 수는 8,538건(34.7%)를 차지하였으며, 서비스 지원 등의 개입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는 16,066건(65.3%)이었다.

〈표 1-3-12〉 피해아동 전체 사례종결 현황

(단위 : 건, %)

사례종결		진행중		계	
8,538	(34.7)	16,066	(65.3)	24,604	(100.0)

2018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24,604건을 바탕으로 피해아동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피해아동의 상황은 아동의 초기조치와 최종조치를 포함한 전체 상황을 의미한다. 원가정보호가 지속된 경우가 20,164건(82.0%)으로 가장 많았고, 분리조치 된 경우 3,287건(13.4%), 가정복귀 된 경우는 1,020건(4.1%)으로 나타났다.

〈표 1-3-13〉 피해아동 상황

(단위 : 건, %)

피해아동 상황		2018	
원가정보호 지속		20,164	(82.0)
가정복귀	원가정보호~가정복귀	101	(0.4)
	분리조치~가정복귀	888	(3.6)

피해아동 상황		2018	
가정복귀	기타~가정복귀	31	(0.1)
	소계	1,020	(4.1)
분리조치	분리조치 지속	2,841	(11.5)
	원가정보호~분리조치	394	(1.6)
	분리조치~분리조치	46	(0.2)
	기타~분리조치	6	(0.0)
	소계	3,287	(13.4)
기타		101	(0.4)
사망		32	(0.1)
계		24,604	(100.0)

나.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피해아동 보호 현황*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으로 피해아동에게 숙식뿐 아니라 생활지원과 상담 및 치료,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① 2018년도 피해아동 입·퇴소 현황

2018년 전국 총 65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총 973명의 아동을 보호하였다. 이 중 2018년 이전에 입소하여 2018년도에도 보호를 받은 아동의 수는 전체의 251명(25.8%)이었고, 2018년도에 입소한 아동은 722명(74.2%)이었다.

〈표 1-3-14〉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현황

(단위 : 명, %)

	2018년 이전 입소아동		2018년 입소아동		총 보호아동	
아동 수	251	(25.8)	722	(74.2)	973	(100.0)

2018년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한 아동 973명 중 퇴소한 아동은 678명(69.7%)이었고, 재원하고 있는 아동은 295명(30.3%)이었다.

〈표 1-3-15〉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현황

(단위 : 명, %)

	퇴소 아동		재원 아동		총 보호아동	
아동 수	678	(69.7)	295	(30.3)	973	(100.0)

② 2018년도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2018년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퇴소한 아동 총 678명 기준 퇴소 아동들의 거주 기간을 살펴보면, 1개월 미만 거주한 아동은 306명(45.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159명(23.5%), 6개월 이상~1년 미만 85명(12.5%),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81명(11.9%), 1년 이상 47명(6.9%) 순으로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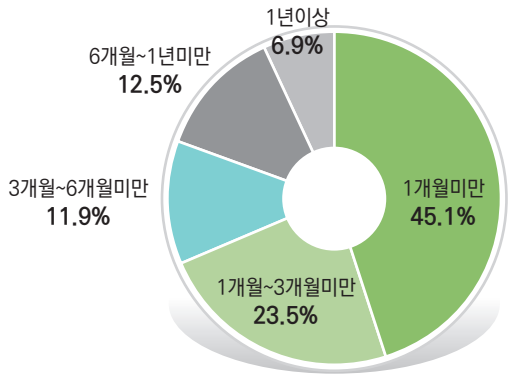
* 2018년 12월 기준 총 65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총 973명을 보호하였음.

〈표 1-3-16〉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단위 : 명, %)

거주 기간	명수(비율)	
1개월 미만	306	(45.1)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159	(23.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81	(11.9)
6개월 이상 ~ 1년 미만	85	(12.5)
1년 이상	47	(6.9)
계	678	(100.0)

※퇴소 아동 678명 기준



[그림 1-3-8]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③ 2018년도 퇴소 아동의 거주지

2018년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퇴소한 아동 전체 678명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살펴보면, 원가정 복귀한 아동이 347명(51.2%)로 가장 높았다. 타 시설 입소는 260명(38.3%), 병원, 연고자보호, 자립, 가출 등의 사유로 퇴소한 기타 아동 44명(6.5%), 학대행위자가 부모일 때 다른 부모에 의한 보호를 포함한 친족(친인척)보호된 아동은 19명(2.8%), 가정위탁 8명(1.2%)순으로 나타났다.

〈표 1-3-17〉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 거주지

(단위 : 명, %)

퇴소 후 거주지	명수(비율)	
원가정 복귀	347	(51.2)
친족(친인척)보호	19	(2.8)
가정위탁	8	(1.2)
타 시설 입소	260	(38.3)
기타	44	(6.5)
계	678	(100.0)

※퇴소 아동 678명 기준

2) 학대행위자 상황

2018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24,604건을 바탕으로 학대행위자 상황 중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고소·고발뿐 아니라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한 경우 해당하는 것으로 7,988건이었다.

〈표 1-3-18〉 학대행위자 상황

(단위 : 건)

아동학대사례 건수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24,604	7,988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상황 중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의 경우 정서학대 5,334건(43.0%), 신체학대 4,624건(37.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3-1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상황

(단위 : 건,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계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4,624	(37.2)	5,334	(43.0)	1,107	(8.9)	1,354	(10.9)	12,419	(100.0)

※중복포함

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치 현황*

본 절에서는 2018년 아동학대사례 중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조치 현황을 집계하였다. 2018년도 아동학대사례는 24,604건이며, 이 중 2,290건(9.3%)이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조치되었다.

〈표 1-3-20〉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비율

(단위: 건, %)

아동학대사례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비율
24,604	2,290	9.3

①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원이 응급조치를 실시한 건수는 873건(74.4%),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한 건수는 301건(25.6%)으로 건수가 총 1,174건이었다. 응급조치 내용 중 상담원이 가장 많은 조치를 취한 내용은 3호(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도)가 813건(80.4%)이었고, 다음으로 2호(피해아동으로부터 행위자 격리) 89건(8.8%), 4호(피해아동 의료기관 인도) 88건(8.7%), 1호(학대행위 제지) 21건(2.1%)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가장 많은 조치를 취한 내용은 상담원과 마찬가지로 3호(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도) 245건(47.6%)이었다. 다음으로 2호(피해아동으로부터 행위자 격리)는 125건(24.3%), 1호(학대행위 제지) 102건(19.8%), 4호(피해아동 의료기관 인도) 43건(8.3%)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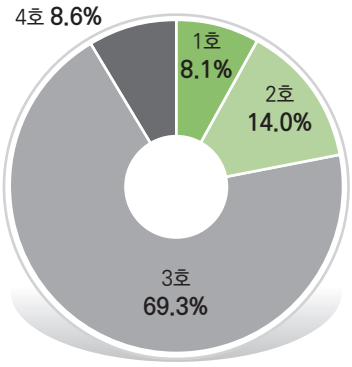
*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치 현황의 경우 2019.2.28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수정보완 된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경찰청 통계는 미반영함.

〈표 1-3-21〉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단위 : 건, %)

분류	건수		조치 내용									
			1호		2호		3호		4호		계 (중복집계)	
상담원	873	(74.4)	21	(2.1)	89	(8.8)	813	(80.4)	88	(8.7)	1,011	(100.0)
경찰	301	(25.6)	102	(19.8)	125	(24.3)	245	(47.6)	43	(8.3)	515	(100.0)
계	1,174	(100.0)	123	(8.1)	214	(14.0)	1,058	(69.3)	131	(8.6)	1,526	(100.0)

·1호: 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
·2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3호: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그림 1-3-9] 피해아동 응급조치 세부 내용

② 임시조치 결정 현황

임시조치 최종결정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아동·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요청한 경우,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한 경우 혹은 판사 직권으로 임시조치가 결정된 사례는 총 1,558건(87.7%)에 해당하고, 청구가 기각된 사례는 218건(12.3%)이었다. 먼저 임시조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임시조치 5호(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위탁)가 1,134건(35.4%)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임시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가 1,011건(31.6%)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임시조치 2호(100m 이내 접근 금지)조치는 주거, 학교 및 학원, 보호시설, 병원, 그 외 기타 장소로 중복 집계가 가능하다. 이 중 보호시설로의 접근금지가 712건(35.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 및 학원으로의 접근금지가 678건(33.9%), 주거로의 접근금지가 514건(25.7%)순으로 높았다. 5호, 2호를 제외하고 3호(전기통신 접근금지)가 697건(21.8%)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3-22〉 임시조치 결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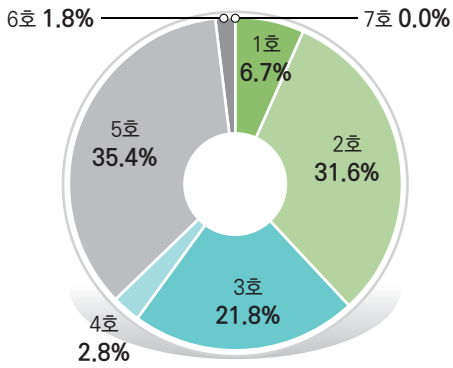
(단위 : 건, %)

신청인	결정 건수	기각 건수	총 건수	세부 내용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결정 계 (중복집계)
					주거	학교 학원	보호 시설	병원	기타	소계 (중복집계)	소계 (중복제외)						
사법 경찰관	735	128	863	146	322	416	492	29	0	1288	666	439	54	499	21	0	1825
	(85.2)	(14.8)	(100.0)	(8.0)	(25.0)	(32.3)	(38.2)	(2.3)	(0.0)	(100.0)	(36.5)	(24.1)	(3.0)	(27.3)	(1.2)	(0.0)	(100.0)
아동보호 전문기관장	545	83	628	26	111	170	164	2	0	460	215	176	21	427	26	0	891
	(86.8)	(13.2)	(100.0)	(2.9)	(24.1)	(37.0)	(35.7)	(0.4)	(0.0)	(100.0)	(24.1)	(19.8)	(2.4)	(47.9)	(2.9)	(0.0)	(100.0)
변호사	6	0	6	1	5	5	1	0	0	11	6	3	1	0	0	0	11
	(100.0)	(0.0)	(100.0)	(9.1)	(45.5)	(45.5)	(9.1)	(0.0)	(0.0)	(100.0)	(54.5)	(27.3)	(9.1)	(0.0)	(0.0)	(0.0)	(100.0)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9	0	9	2	3	4	1	0	0	11	5	4	0	4	2	0	17
	(100.0)	(0.0)	(100.0)	(11.8)	(27.3)	(36.4)	(9.1)	(0.0)	(0.0)	(100.0)	(29.4)	(23.5)	0.0	(23.5)	(11.8)	(0.0)	(100.0)
피해아동	11	0	11	4	7	8	3	1	0	20	10	8	0	5	0	0	27
	(100.0)	(0.0)	(100.0)	(14.8)	(35.0)	(40.0)	(15.0)	(5.0)	(0.0)	(100.0)	(37.0)	(29.6)	(0.0)	(18.5)	(0.0)	(0.0)	(100.0)
판사직권	161	0	161	12	29	39	29	1	0	103	56	32	9	143	4	0	256
	(100.0)	(0.0)	(100.0)	(4.7)	(28.2)	(37.9)	(28.2)	(1.0)	(0.0)	(100.0)	(21.9)	(12.5)	(3.5)	(55.9)	(1.6)	(0.0)	(100.0)
파악불가	91	7	98	23	37	36	22	6	0	105	53	35	5	56	5	0	177
	(92.9)	(7.1)	(100.0)	(13.0)	(35.2)	(34.3)	(21.0)	(5.7)	(0.0)	(100.0)	(29.9)	(19.8)	(2.8)	(31.6)	(2.8)	(0.0)	(100.0)
계	1558	218	1776	214	514	678	712	39	0	1998	1011	697	90	1134	58	0	3204
	(87.7)	(12.3)	(100.0)	(6.7)	(25.7)	(33.9)	(35.6)	(2.0)	(0.0)	(100.0)	(31.6)	(21.8)	(2.8)	(35.4)	(1.8)	(0.0)	(100.0)

·1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서의 위탁
·7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파악불가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임시조치의청구)에 따른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등의 청구 또는 신청 요청으로 임시조치가 청구되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에 대한 결과만 통보 받은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신청(청구)인이 파악이 어려울 수 있음.

* 임시조치 2호 조치는 100m 이내 접근금지로 주거·학교 및 학원·보호시설·병원·기타에 대해서 중복으로 신청 및 청구, 결정이 가능하여 2호 조치만 따로 집계하여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하였고, 1호~7호에 대한 중복 집계에서는 2호의 중복 제외한 소계를 반영하여 결정 총계의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함.



[그림 1-3-10] 임시조치 결정 세부 내용

③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결정된 총 314건 중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건수는 213건으로 나타났고,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정한 건수는 127건이었다.

구체적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건수에 대해 살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청구하여 결정된 건수는 총 257건 중 기각된 22건을 제외하고 235건이었다. 변호사는 57건을 청구하여 54건이 결정되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은 14건을 청구하여 13건이 결정되었으며, 피해아동 본인이 청구하여 결정된 건수는 6건이었고, 판사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결정된 건수는 6건으로 집계되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4호(피해아동 보호위탁)가 233건(28.8%)으로 가장 높았고, 2호(학대행위자의 접근제한 조치)가 221건(27.4%), 3호(전기통신 접근제한) 195건(24.1%), 7호(친권 제한 또는 정지) 54건(6.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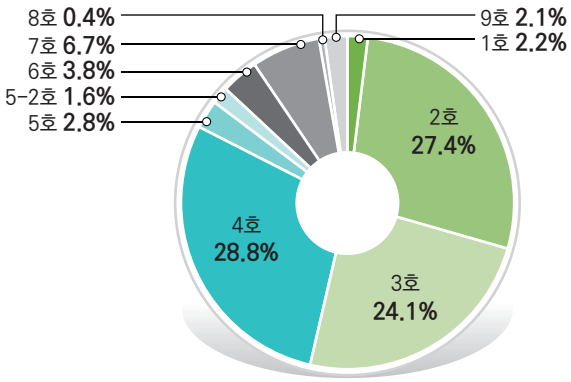
〈표 1-3-23〉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단위: 건, %)

청구인	결정 건수	기각 건수	총 건수	임시보호 결정	임시보호 기각	결정 내용										
						1호	2호	3호	4호	5호	5-2호	6호	7호	8호	9호	계 (중복 집계)
판사 직권	6	0	6	3	3	0	4	4	5	0	3	0	0	0	0	16
						(0.0)	(25.0)	(25.0)	(31.3)	(0.0)	(18.8)	(0.0)	(0.0)	(0.0)	(0.0)	(100.0)
아동보호 전문기관장	235	22	257	171	86	14	159	135	183	21	5	28	43	3	16	607
						(2.3)	(26.2)	(22.2)	(30.1)	(3.5)	(0.8)	(4.6)	(7.1)	(0.5)	(2.6)	(100.0)
변호사	54	3	57	34	23	2	44	43	37	1	1	2	8	0	1	139
						(1.4)	(31.7)	(30.9)	(26.6)	(0.7)	(0.7)	(1.4)	(5.8)	(0.0)	(0.7)	(100.0)

청구인	결정 건수	기각 건수	총 건수	임시 보호 결정	임시 보호 기각	결정 내용										
						1호	2호	3호	4호	5호	5-2호	6호	7호	8호	9호	계 (중복 집계)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13	1	14	4	10	2	8	7	7	0	4	1	1	0	0	30
						(6.7)	(26.7)	(23.3)	(23.3)	(0.0)	(13.3)	(3.3)	(3.3)	(0.0)	(0.0)	(100.0)
피해아동	6	0	6	1	5	0	6	6	1	1	0	0	2	0	0	16
						(0.0)	(37.5)	(37.5)	(6.3)	(6.3)	(0.0)	(0.0)	(12.5)	(0.0)	(0.0)	(100.0)
계	314	26	340	213	127	18	221	195	233	23	13	31	54	3	17	808
						(2.2)	(27.4)	(24.1)	(28.8)	(2.8)	(1.6)	(3.8)	(6.7)	(0.4)	(2.1)	(100.0)

·1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호: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호: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2호: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6호: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호: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호: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그림 1-3-11]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세부 내용

나.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

2018년 전체 아동학대사례인 24,604건 중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 등의 사건처리 조치를 취한 것은 7,988건(32.5%)이었다. 고소·고발이 진행된 경우는 7,449건(93.3%)이었고 고소·고발은 진행되지 않았으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처분이 행해진 경우는 539건(6.7%)이었다.

* 고소고발조치의 경우 2019.2.28.일 마감 이후 수정보완 한 값을 반영함

〈표 1-3-24〉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

(단위: 건,%)

고소·고발 등 수사진행												수사미진행·처벌법조치완료		계	
고소		고발		수사의뢰		인지수사		파악불가		소계					
369	(4.6)	993	(12.4)	1,121	(14.0)	4,901	(61.4)	65	(0.8)	7,449	(93.3)	539	(6.7)	7,988	(100.0)

※ 인지수사: 고소고발 건 없이 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식될 때 수사를 개시·진행하는 경우와 처벌법 응급조치 등에 따른 수사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모두를 포함.
※ 수사미진행·처벌법조치완료: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처분이 행해진 사례
※학대행위자 수감 및 조사거부, 정보부족 등의 경우 학대조사를 통한 정보 취득에 제한사항 발생하여 파악불가 값이 생길 수 있음.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된 사례에 대하여 경찰수사, 검찰수사, 재판진행 중 및 판결 항목으로 구분하여 결과 값을 제시하였다. 본 자료에서 경찰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검찰수사와 법원으로 송치된 사례는 경찰수사의 고소·고발 통계 자료로 집계하지 않았으며, 검찰수사를 거쳐 법원으로 기소된 사례는 검찰수사 통계수치에 포함하지 않았다.

경찰수사만 이루어진 사례는 3,038건(38.0%)이었다. 그 중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는 2,475건(31.0%), 내사종결된 사례는 379건(4.7%)이었다. 검찰수사가 이루어진 사례 1,807건 중 수사 진행 중인 사례는 856건(10.7%), 불기소된 사례는 521건(6.5%), 아동보호송치사건은 277건(3.5%), 가정보호송치사건은 51건(0.6%), 형사기소는 21건(0.3%)이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례 737건 중 1심이 진행 중인 사례는 348건(4.4%), 항소심(2심)이 진행 중인 사례는 71건(0.9%), 상고심(최종)이 진행 중인 사례는 30건(0.4%)이었다.

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는 총 1,705건(21.3%)이었다. 이중 보호처분 사례는 1,081건(13.5%), 형사처벌 사례가 266건(3.3%) 등으로 집계되었다.

〈표 1-3-25〉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

(단위 : 건, %)

구 분		건수(비율)	
경찰수사	수사중	2,475	(31.0)
	내사종결	379	(4.7)
	파악불가	184	(2.3)
	소계	3,038	(38.0)
검찰수사	수사중	856	(10.7)
	불기소	521	(6.5)
	아동보호송치사건	277	(3.5)
	가정보호송치사건	51	(0.6)
	형사기소	21	(0.3)
	파악불가	81	(1.0)
	소계	1,807	(22.6)
재판진행중	1심 진행	348	(4.4)
	항소심 진행	71	(0.9)
	상고심 진행	30	(0.4)
	파악불가	288	(3.6)
	소계	737	(9.2)

구 분			건수(비율)	
판결	보호처분	보호관찰	66	(0.8)
		보호관찰+상담위탁	124	(1.6)
		보호관찰+치료위탁	12	(0.2)
		보호관찰+치료위탁+상담위탁	6	(0.1)
		사회봉사·수강명령	195	(2.4)
		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	51	(0.6)
		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상담위탁	12	(0.2)
		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치료위탁	4	(0.1)
		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치료위탁+상담위탁	1	(0.0)
		사회봉사·수강명령+상담위탁	14	(0.2)
		상담위탁	503	(6.3)
		접근행위제한	3	(0.0)
		접근행위제한+보호관찰	4	(0.1)
		접근행위제한+보호관찰+치료위탁+상담위탁	1	(0.0)
		접근행위제한+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	7	(0.1)
		접근행위제한+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상담위탁	2	(0.0)
		접근행위제한+상담위탁	5	(0.1)
		접근행위제한+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	8	(0.1)
		접근행위제한+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보호관찰	1	(0.0)
		접근행위제한+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보호관찰+상담위탁	8	(0.1)
		접근행위제한+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보호관찰+치료위탁	1	(0.0)
		접근행위제한+전기통신이용접근행위제한+사회봉사·수강명령	3	(0.0)
		접근행위제한+전기통신이용접근행위제한+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	2	(0.0)
		접근행위제한+전기통신이용접근행위제한+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상담위탁	1	(0.0)
		접근행위제한+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 치료위탁+상담위탁	3	(0.0)
		접근행위제한+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 상담위탁	7	(0.1)
		접근행위제한+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 치료위탁+상담위탁	1	(0.0)
		접근행위제한+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 친권행사제한+보호관찰+치료위탁	2	(0.0)
		접근행위제한+친권행사제한+보호관찰+치료위탁	1	(0.0)
		치료위탁	3	(0.0)
		치료위탁+상담위탁	3	(0.0)
		친권행사제한+보호관찰+치료위탁+상담위탁	1	(0.0)
		파악불가	26	(0.3)
		보호처분 소계	1,081	(13.5)

구 분			건수(비율)	
판결	형사처벌	구류	1	(0.0)
		벌금	55	(0.7)
		벌금+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이수	2	(0.0)
		벌금+집행유예	1	(0.0)
		벌금+집행유예+사회봉사+보호관찰	1	(0.0)
		벌금+집행유예+수강명령	3	(0.0)
		징역	68	(0.9)
		징역+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이수	20	(0.3)
		징역+집행유예	50	(0.6)
		징역+집행유예+보호관찰	4	(0.1)
		징역+집행유예+사회봉사	1	(0.0)
		징역+집행유예+수강명령	35	(0.4)
		징역+집행유예+수강명령+보호관찰	6	(0.1)
		징역+집행유예+수강명령+사회봉사	18	(0.2)
		징역+집행유예+수강명령+사회봉사+보호관찰	1	(0.0)
		형사처벌 소계	266	(3.3)
	공소기각		12	(0.2)
	무죄		6	(0.1)
	불처분		273	(3.4)
	파악불가		67	(0.8)
	판결 소계		1,705	(21.3)
파악불가		수사진행했으나 결과값 없음	162	(2.0)
		수사미진행·처벌법조치 완료	539	(6.7)
		소계	701	(8.8)
계			7,988	(100.0)

※학대행위자 수감 및 조사거부, 정보부족 등의 경우 학대조사를 통한 정보 취득에 제한사항 발생하여 파악불가 값이 생길 수 있음.

아동학대 유형별로 학대행위자 고소·고발의 세부적인 판결 결과를 살펴보면 방임의 경우 보호처분이 178건(23.6%)로 다른 판결 결과보다 높았으며, 성학대의 경우는 형사처벌이 66건(9.5%)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중복학대의 경우는 보호처분이 632건(15.9%)로 높게 나타났다.

〈표 1-3-26〉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단위 : 건, %)

유형 \ 고소·고발 결과		경찰 수사	검찰 수사	재판 진행중	판결					파악불가		계
					보호 처분	형사 처벌	*무죄 +공소 +불처분	파악 불가	소계	수사진행 했으나 결과값 없음	수사미진행·처벌법조치 완료	
신체학대		339	312	83	139	50	51	6	246	34	57	1,071
		(31.7)	(29.1)	(7.7)	(13.0)	(4.7)	(4.8)	(0.6)	(23.0)	(3.2)	(5.3)	(100.0)
정서학대		776	278	123	116	27	41	9	193	38	72	1,480
		(52.4)	(18.8)	(8.3)	(7.8)	(1.8)	(2.8)	(0.6)	(13.0)	(2.6)	(4.9)	(100.0)
성학대		254	219	106	16	66	3	15	100	5	12	696
		(36.5)	(31.5)	(15.2)	(2.3)	(9.5)	(0.4)	(2.2)	(14.4)	(0.7)	(1.7)	(100.0)
방임		229	145	68	178	15	13	1	207	9	97	755
		(30.3)	(19.2)	(9.0)	(23.6)	(2.0)	(1.7)	(0.1)	(27.4)	(1.2)	(12.8)	(100.0)
중복학대	신체·정서	1,080	653	225	515	75	154	31	775	60	194	2,987
		(36.2)	(21.9)	(7.5)	(17.2)	(2.5)	(5.2)	(1.0)	(25.9)	(2.0)	(6.5)	(100.0)
	신체·성	17	15	11	2	3	0	0	5	1	4	53
		(32.1)	(28.3)	(20.8)	(3.8)	(5.7)	(0.0)	(0.0)	(9.4)	(1.9)	(7.5)	(100.0)
	신체·방임	16	16	9	10	3	3	1	17	4	15	77
		(20.8)	(20.8)	(11.7)	(13.0)	(3.9)	(3.9)	(1.3)	(22.1)	(5.2)	(19.5)	(100.0)
	신체·정서·성	63	29	30	6	11	0	0	17	4	7	150
		(42.0)	(19.3)	(20.0)	(4.0)	(7.3)	(0.0)	(0.0)	(11.3)	(2.7)	(4.7)	(100.0)
	신체·정서·방임	96	34	45	50	9	10	0	69	3	31	278
		(34.5)	(12.2)	(16.2)	(18.0)	(3.2)	(3.6)	(0.0)	(24.8)	(1.1)	(11.2)	(100.0)
	신체·정서·성·방임	3	2	1	1	0	0	0	1	0	1	8
		(37.5)	(25.0)	(12.5)	(12.5)	(0.0)	(0.0)	(0.0)	(12.5)	(0.0)	(12.5)	(100.0)
	정서·성	110	54	12	1	7	0	3	11	3	7	197
		(55.8)	(27.4)	(6.1)	(0.5)	(3.6)	(0.0)	(1.5)	(5.6)	(1.5)	(3.6)	(100.0)
	정서·방임	52	50	24	47	0	16	1	64	1	42	233
		(22.3)	(21.5)	(10.3)	(20.2)	(0.0)	(6.9)	(0.4)	(27.5)	(0.4)	(18.0)	(100.0)
	정서·성·방임	2	0	0	0	0	0	0	0	0	0	2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성·방임	1	0	0	0	0	0	0	0	0	0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소계	1,440	853	357	632	108	183	36	959	76	301	3,986
		(36.1)	(21.4)	(9.0)	(15.9)	(2.7)	(4.6)	(0.9)	(24.1)	(1.9)	(7.6)	(100.0)
계		3,038	1,807	737	1,081	266	291	67	1,705	162	539	7,988
		(38.0)	(22.6)	(9.2)	(13.5)	(3.3)	(3.6)	(0.8)	(21.3)	(2.0)	(6.7)	(100.0)

※학대행위자 수감 및 조사거부, 정보부족 등의 경우 학대조사를 통한 정보 취득에 제한사항 발생하여 파악불가 값이 생길 수 있음.

* 무죄, 공소기각, 불처분을 합친 값임.

5. 서비스 제공 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극복하고 학대행위자의 재학대를 방지하며 피해아동 가족의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그리고 피해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에는 상담서비스, 입원치료·통원치료를 포함하는 의료서비스, 심리검사·미술치료·놀이치료 등을 포함하는 심리치료 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기관 연결·공적지원 연결을 포함하는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일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퇴소 및 절차 지원, 분리보호 및 절차 지원, 출결 및 비밀전학 처리 지원 등을 포함하는 학습 및 보호 지원서비스, 법률자문과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 진행과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또는 고소·고발 등 사건 처리에 대한 서비스가 있다. 또한 임시조치 또는 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 결정,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를 통해 검찰·법원으로부터 상담·교육 위탁 처분을 받은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자수탁프로그램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한 상담 및 교육인 피해아동수탁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 재학대 예방 지원 사업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을 방문하여 심리검사, 심리치료, 상담, 일상생활 지원, 건강·정신지원, 전문서비스 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부적인 실적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3-27〉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 : 회, %)

구분	2018년 전체 서비스
피해아동	461,891
학대행위자	206,419
부모 또는 가족	137,127
계	805,437

〈표 1-3-28〉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 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 : 회, %)

구분		2018년 홈케어 서비스
참여대상 인원(명)	피해아동	2,554
	학대행위자	1,375
	가족구성원	637
	소계	4,566
서비스제공횟수(회)	피해아동	26,897
	학대행위자	16,041
	가족구성원	6,109
	소계	49,047

2018년 한 해 동안 피해아동에게 제공한 서비스 횟수는 총 461,891회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담서비스가 295,312회(63.9%)로 가장 높았고, 심리치료지원서비스 52,661회(11.4%), 가족기능강화서비스 33,932회(7.3%)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총 206,419회로 집계되었으며, 상담서비스 143,896회(69.7%), 심리치료지원서

비스 18,859회(9.1%), 행위자수탁프로그램 15,538회(7.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비가해 부모 또는 가족 대상 서비스는 총 137,127회였으며, 상담서비스 105,996회(77.3%), 가족기능강화서비스 12,188회(8.9%), 심리치료 지원서비스 10,594회(7.7%)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3-29〉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중복포함)

(단위 : 회, %)

구분	아동		행위자		부모 및 가족	
상담	295,312	(63.9)	143,896	(69.7)	105,996	(77.3)
의료지원	6,937	(1.5)	1,864	(0.9)	757	(0.6)
심리치료지원	52,661	(11.4)	18,859	(9.1)	10,594	(7.7)
가족기능강화	33,932	(7.3)	8,519	(4.1)	12,188	(8.9)
학습 및 보호지원	18,353	(4.0)	1,930	(0.9)	1,043	(0.8)
사건처리지원	31,977	(6.9)	10,961	(5.3)	1,982	(1.4)
행위자수탁프로그램	429*	(0.1)	15,538	(7.5)	359**	(0.3)
피해아동수탁프로그램	5	(0.0)	6	(0.0)	4	(0.0)
기타	22,285	(4.8)	4,846	(2.3)	4,204	(3.1)
계	461,891	(100.0)	206,419	(100.0)	137,127	(100.0)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행위자수탁프로그램은 피해아동 및 부모 또는 가족에게 실시한 서비스 제공 실적을 반영함. 피해아동 및 부모 또는 가족에게 개인 및 가족상담이 제공되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피해아동수탁프로그램은 피해아동보호명령 5-2호 명령을 받아 피해아동, 행위자, 부모 또는 가족에게 개인 및 가족상담이 제공되었음.

6. 재학대 사례

1) 재학대 사례의 현황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2018년에 신고접수 되어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인 재학대 사례는 총 2,543건*이며 재학대 아동 명수는 2,195명이다. 2018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24,604건 대비 재학대 사례는 10.3%이다.

〈표 1-3-30〉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3개년)

(단위 : 건, 명, %)

연도	재학대 사례 건수	재학대 아동수	아동학대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
2016	1,591	1,397	8.5
2017	2,160	1,859	9.7
2018	2,543	2,195	10.3

2)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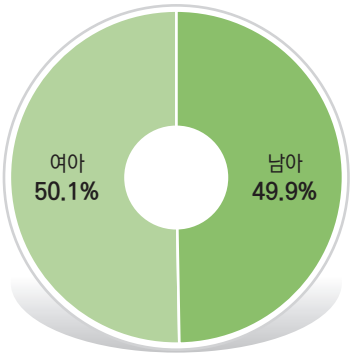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성별의 경우, 여아 1,275건(50.1%), 남아 1,268건(49.9%)이었다.

〈표 1-3-31〉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명, %)

성별	건수(비율)		명수(비율)	
남아	1,268	(49.9)	1,090	(49.7)
여아	1,275	(50.1)	1,105	(50.3)
계	2,543	(100.0)	2,195	(100.0)



[그림 1-3-1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 2018년의 재학대 사례란 2014년 이후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가 2018년에 다시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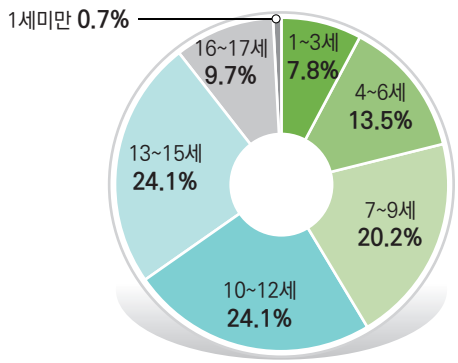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연령의 경우, 만 13세~15세가 612건(24.1%), 만 10세~12세 611건(24.0%), 만7세~9세 513건(20.2%)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표 1-3-3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명, %)

연 령(만)	건수(비율)		명수(비율)	
1세 미만	19	(0.7)	15	(0.7)
1~3세	199	(7.8)	150	(6.8)
4~6세	343	(13.5)	286	(13.0)
7~9세	513	(20.2)	449	(20.5)
10~12세	611	(24.0)	524	(23.9)
13~15세	612	(24.1)	549	(25.0)
16~17세	246	(9.7)	222	(10.1)
계	2,543	(100.0)	2,195	(100.0)



[그림 1-3-13]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3)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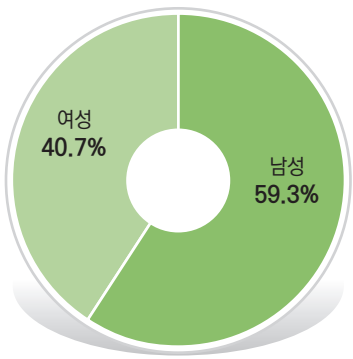
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의 경우, 남성이 1,507건(59.3%), 여성이 1,036건(40.7%)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8.6%p 높았다.

〈표 1-3-3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 건, 명, %)

성 별	건수(비율)		명수(비율)	
남성	1,507	(59.3)	1,033	(59.1)
여성	1,036	(40.7)	714	(40.9)
계	2,543	(100.0)	1,747	(100.0)



[그림 1-3-1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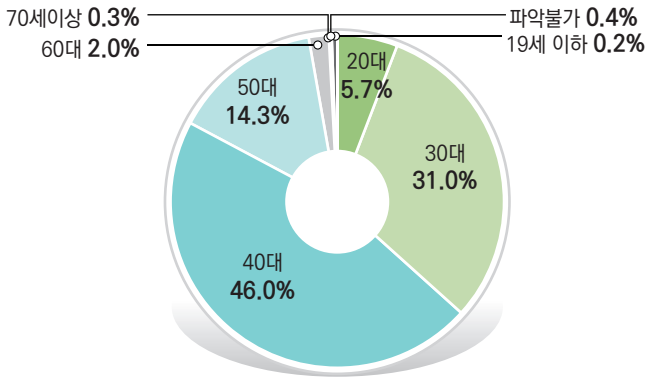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연령의 경우, 40대가 1,171건(46.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는 789건(31.0%), 50대가 365건(14.4%), 20대가 145건(5.7%) 순으로 높게 보고되었다.

〈표 1-3-3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 건, 명, %)

연 령 (만)	건수(비율)		명수(비율)	
19세 이하	5	(0.2)	5	(0.3)
20대(20~29세)	145	(5.7)	96	(5.5)
30대(30~39세)	789	(31.0)	495	(28.3)
40대(40~49세)	1,171	(46.0)	818	(46.8)
50대(50~59세)	365	(14.4)	277	(15.9)
60대(60~69세)	51	(2.0)	41	(2.3)
70세 이상	8	(0.3)	8	(0.5)
파악불가	9	(0.4)	7	(0.4)
계	2,543	(100.0)	1,747	(100.0)

※ 학대행위자 수감 및 조사거부, 정보부족 등의 경우 학대조사를 통한 정보 취득에 제한사항 발생하여 파악불가 값이 생길 수 있음.



[그림 1-3-15]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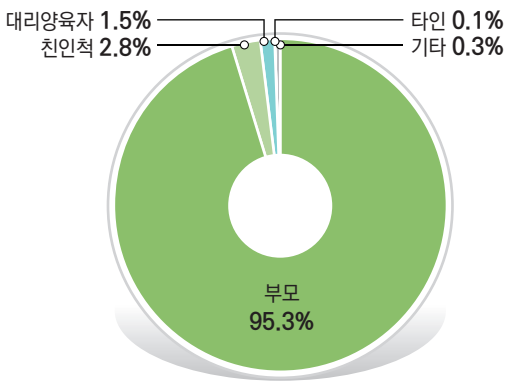
4)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의 경우, 부모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2,427건(95.4%)으로 월등히 높았다. 다음으로는 친인척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71건(2.8%), 대리양육자에 의한 재학대 사례 38건(1.5%)이었다..

〈표 1-3-35〉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 계		건수(비율)	
부모	친부	1,386	(54.5)
	친모	946	(37.2)
	계부	52	(2.0)
	계모	39	(1.5)
	양부	1	(0.0)
	양모	3	(0.1)
	소계	2,427	(95.4)
친인척	친조부	8	(0.3)
	친조모	19	(0.7)
	외조부	3	(0.1)
	외조모	7	(0.3)
	친인척	23	(0.9)
	형제·자매	11	(0.4)
	소계	71	(2.8)
대리양육자	부,모의 동거인	29	(1.1)
	유치원교사,교직원	1	(0.0)
	교원	1	(0.0)
	아동복지시설종사자	3	(0.1)
대리양육자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	1	(0.0)
	위탁부	2	(0.1)
	위탁모	1	(0.0)
	소계	38	(1.5)
타인	이웃	1	(0.0)
기타		6	(0.2)
계		2,543	(100.0)



[그림 1-3-1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5)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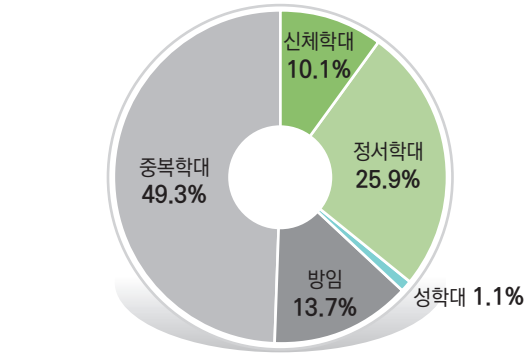
가.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재학대 사례에 대한 아동학대사례유형의 경우, 중복학대가 1,253건(49.3%), 정서학대 658건(25.9%), 방임 349건(13.7%), 신체학대 256건(10.1%), 성학대 27건(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36〉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 건, %)

학대유형	건수(비율)	
신체학대	256	(10.1)
정서학대	658	(25.9)
성 학 대	27	(1.1)
방 임	349	(13.7)
중복학대	1,253	(49.3)
계	2,543	(100.0)



[그림 1-3-17]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6) 재학대 사례 상황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상황

초기조치와 최종조치를 포함한 재학대 사례에 대한 피해아동 상황을 제시하였다. 원가정보호가 지속된 사례는 1,755건(69.0%)으로 가장 높았고, 최종적으로 분리초지된 사례는 606건(23.8%), 가정으로 복귀한 사례는 170건(6.7%), 기타 12건(0.5%)으로 나타났다.

〈표 1-3-37〉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상황

(단위: 건, %)

구분		2018	
원가정보호 지속		1,755	(69.0)
가정 복귀	원가정보호~가정복귀	13	(0.5)
	분리조치~가정복귀	154	(6.1)
	기타-가정복귀	3	(0.1)
	소계	170	(6.7)
분리 조치	분리조치 지속	533	(21.0)
	원가정보호~분리조치	59	(2.3)
	분리조치-가정복귀-분리조치	12	(0.5)
	기타-분리조치	2	(0.1)
	소계	606	(23.8)
기타		12	(0.5)
계		2,543	(100.0)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상황

재학대 사례에 학대행위자 상황 중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를 한 사례는 942건으로 나타났다.

〈표 1-3-38〉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상황

(단위: 건)

재학대 사례 건수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2,543	942

제4절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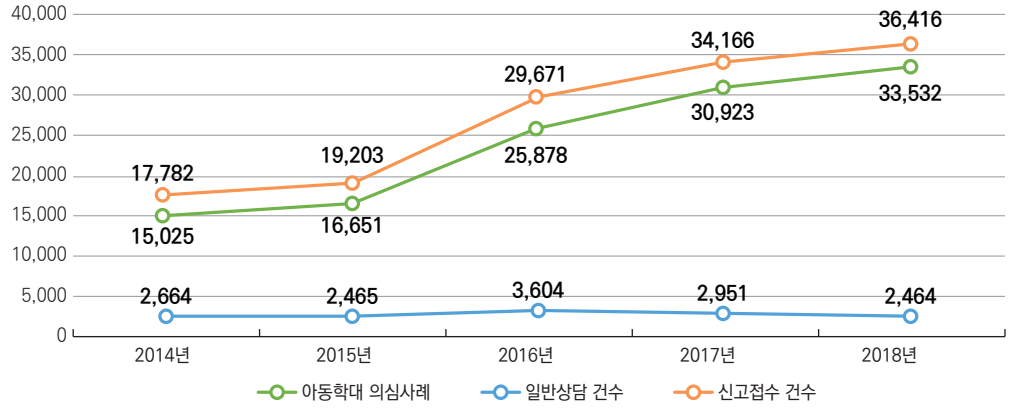
아동학대 신고 중 아동학대의심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부터 80% 이상을 차지하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작년 대비 신고접수건수가 6.6% 증가하였고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수 중 92.1%가 아동학대의심사례였다.

〈표 1-4-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 %)

구분 연도	아동학대 의심사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계		전년 대비 증가율	비고
2014년	15,025	(84.5)	93	(0.5)	2,664	(15.0)	17,782	(100.0)		
2015년	16,651	(86.7)	87	(0.5)	2,465	(12.8)	19,203	(100.0)	8.0	
2016년	25,878	(87.2)	189	(0.6)	3,604	(12.1)	29,671	(100.0)	54.5	
2017년	30,923	(90.5)	292	(0.9)	2,951	(8.6)	34,166	(100.0)	15.1	국정과제 지정
2018년	33,532	(92.1)	420	(1.2)	2,464	(6.8)	36,416	(100.0)	6.6	

* 2008년도 전체 신고 건수 9,570건에는 중복신고 77건이 포함되지 않음.
※해외발생사례 건수는 제외함.



[그림 1-4-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014년 4,358건(29.0%)에서 2016년 8,288건(32.0%)까지 증가했다가 2018년 9,151건(27.3%)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고의무자 중 초·중·고교직원이 가장 많은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988건(13.2%)에서 2018년 6,406건(19.1%)으로 5개년 연속 신고의무자 중 신고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중·고교직원에 이어 두 번째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014년 700건(4.7%)에서 2017년 819건(2.6%)으로 증가하였다.

비신고의무자 직군의 신고 분포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복지관련종사자가 신고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가 2016년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부모가 높게 나타났다. 아동이 신고한 비율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4,512건(13.5%)까지 증가했다.

〈표 1-4-2〉 연도별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

신고자 유형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신고의무자	초·중·고교 직원	1,988 (13.2)	2,172 (13.0)	3,978 (15.4)	5,168 (16.7)	6,406 (19.1)
	의료인	123 (0.8)	137 (0.8)	216 (0.8)	-	-
	의료인·의료기사	-	-	-	296 (1.0)	325 (1.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75 (1.8)	257 (1.5)	498 (1.9)	407 (1.3)	411 (1.2)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24 (0.2)	46 (0.3)	27 (0.1)	33 (0.1)	56 (0.2)
	보육교직원	273 (1.8)	309 (1.9)	286 (1.1)	313 (1.0)	213 (0.6)
	유치원교직원	43 (0.3)	68 (0.4)	114 (0.4)	115 (0.4)	115 (0.3)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26 (0.2)	31 (0.2)	24 (0.1)	9 (0.0)	18 (0.1)
	소방구급대원	28 (0.2)	22 (0.1)	39 (0.2)	33 (0.1)	24 (0.1)
	응급구조사	2 (0.0)	0 (0.0)	2 (0.0)	2 (0.0)	0 (0.0)
	의료기사	0 (0.0)	0 (0.0)	2 (0.0)	-	-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종사자	2 (0.0)	12 (0.1)	12 (0.0)	9 (0.0)	8 (0.0)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20 (0.1)	72 (0.4)	122 (0.5)	0 (0.0)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시설종사자·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종사자	-	-	-	274 (0.9)	168 (0.5)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10 (0.1)	5 (0.0)	11 (0.0)	16 (0.1)	14 (0.0)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174 (1.2)	285 (1.7)	301 (1.2)	169 (0.5)	283 (0.8)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700 (4.7)	602 (3.6)	815 (3.1)	819 (2.6)	-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104 (0.7)	58 (0.3)	98 (0.4)	27 (0.1)	72 (0.2)

신고자 유형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신고의무자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	–	–	695 (2.7)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51 (1.0)	210 (1.3)	312 (1.2)	271 (0.9)	211 (0.6)
	가정위탁지원 센터 종사자	27 (0.2)	30 (0.2)	11 (0.0)	20 (0.1)	25 (0.1)
	건강가정지원 센터 종사자	18 (0.1)	19 (0.1)	44 (0.2)	48 (0.2)	31 (0.1)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종사자	20 (0.1)	41 (0.2)	35 (0.1)	33 (0.1)	52 (0.2)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78 (0.5)	49 (0.3)	51 (0.2)	38 (0.1)	48 (0.1)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185 (1.2)	140 (0.8)	223 (0.9)	357 (1.2)	276 (0.8)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14 (0.1)	28 (0.2)	75 (0.3)	43 (0.1)	121 (0,4)
	아이돌보미	0 (0.0)	9 (0.1)	1 (0.0)	8 (0.0)	11 (0.0)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인력	73 (0.5)	298 (1.8)	296 (1.1)	317 (1.0)	255 (0.8)
	성폭력피해자통합 지원센터 종사자	–	–	0 (0.0)	–	–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	–	0 (0.0)	4 (0.0)	4 (0.0)
	입양기관 종사자	–	–	0 (0.0)	1 (0.0)	4 (0.0)
	소계	4,358 (29.0)	4,900 (29.4)	8,288 (32.0)	8,830 (28.6)	9,151 (27.3)
비신고의무자	아동 본인	628 (4.2)	1,500 (9.0)	2,322 (9.0)	3,883 (12.6)	4,512 (13.5)
	부모	1,991 (13.3)	3,048 (18.3)	4,619 (17.8)	5,328 (17.2)	6,089 (18.2)
	형제,자매	110 (0.7)	231 (1.4)	341 (1.3)	359 (1.2)	403 (1.2)
	친인척	536 (3.6)	452 (2.7)	657 (2.5)	738 (2.4)	607 (1.8)
	이웃·친구	1,202 (8.0)	1,040 (6.2)	1,858 (7.2)	1,963 (6.3)	1,859 (5.5)
	경찰	2,204 (14.7)	846 (5.1)	1,426 (5.5)	645 (2.1)	406 (1.2)
	종교인	27 (0.2)	27 (0.2)	40 (0.2)	24 (0.1)	18 (0.1)
	사회복지관련종사자	3,486 (23.2)	3,590 (21.6)	4,088 (15.8)	323 (1.0)	933 (2.8)

신고자 유형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신고의무자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종사자	–	–	619 (2.4)	6,881 (22.3)	7,756 (23.1)
	의료사회복지사	–	–	–	79 (0.3)	66 (0.2)
	낯선 사람	193 (1.3)	305 (1.8)	649 (2.5)	685 (2.2)	443 (1.3)
	익명	98 (0.7)	134 (0.8)	244 (0.9)	271 (0.9)	228 (0.7)
	기타	199 (1.3)	578 (3.5)	727 (2.8)	914 (3.0)	1,027 (3.1)
	법원	–	–	–	–	34 (0.1)
	소계	10,667 (71.0)	11,751 (70.6)	17,590 (68.0)	22,093 (71.4)	24,381 (72.7)
계		15,025 (100.0)	16,651 (100.0)	25,878 (100.0)	30,923 (100.0)	33,532 (100.0)

※ 2009년부터 유치원교직원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시설종사자 항목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보육교직원,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로 구분하여 집계함,

※ 2012년 8월 5일, 전부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 직군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건강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가 추가됨(아동복지법 제 25조 의거)

※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 직군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인력이 추가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의거)

※ 2016년 11월 30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 직군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입양기관 종사자가 추가됨.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종사자가 통합되었음(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의거)

※ 2016년 9월 23일,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복지시설로 편입되면서 신고의무자 직군에 속하였으나, 이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2016.11.30.시행)으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신고의무자 직군에서 제외됨.

※ 기존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7항에 규정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삭제로 인해 기존 신고의무자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항목을 삭제하고 비신고의무자의 사회복지관련종사자 항목에 통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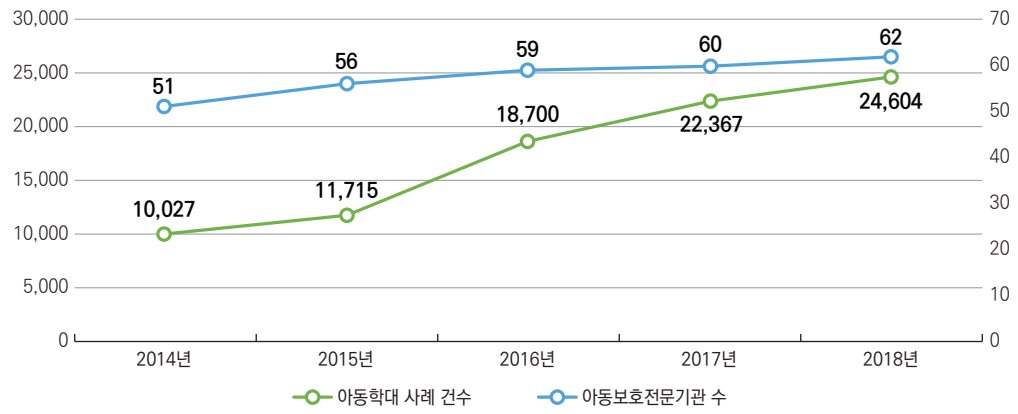
3)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2016년 전년 대비 약 50% 이상 증가하였고 2018년의 경우 전년 대비 아동학대사례 증가율이 10.0%이었다. 기관수의 경우 2014년 51개소에서 2018년 62개소로 증가했다.

〈표 1-4-3〉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단위 : 건, %, 개소)

구분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아동학대사례	건수	10,027	11,715	18,700	22,367	24,604
	증가율	47.5	16.8	59.6	19.6	10.0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수	51	56	59	60	62
	증가 기관수	1	5	4	1	2



[그림 1-4-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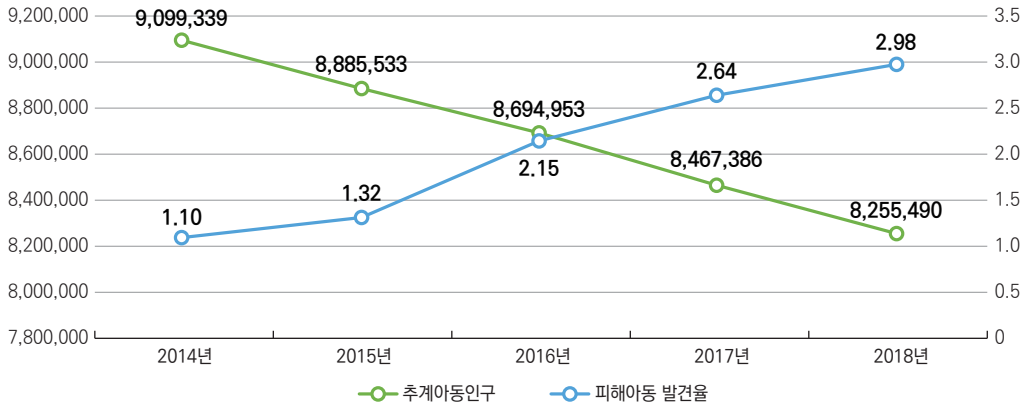
4)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추계 아동 인구(만 0~17세)를 기준으로 인구 1,000명 당 피해아동 발견율을 산출하여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계 아동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는 데 반면 피해아동 발견율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표 1-4-4〉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단위 : 명, 건, ‰)

구분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추계아동인구* (만 0~17세)	9,099,339	8,885,533	8,694,953	8,467,386	8,255,490
아동학대사례	10,027	11,715	18,700	22,367	24,604
피해아동 발견율	1.10	1.32	2.15	2.64	2.98



[그림 1-4-3]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016년 추계인구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으며 2017년 및 2018년 발견율의 경우 통계청의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시도를 활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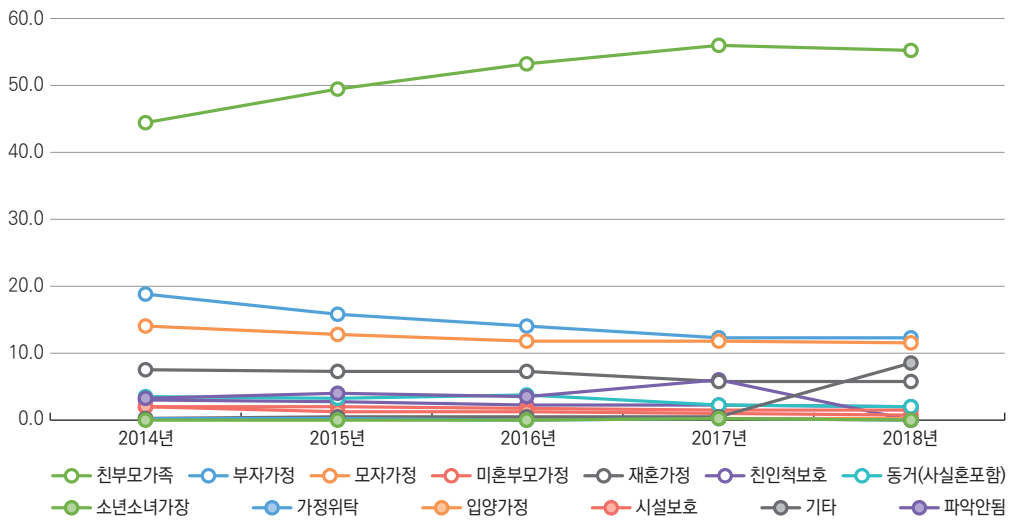
5) 연도별 아동학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여 아동학대 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이후 중복학대와 정서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서학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중복학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방임은 2014년 1,870건(18.6%)이후 2018년 2,604건(10.6%)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1-4-5〉 연도별 아동학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 건, %)

학대유형 / 연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		계	
2014년	1,453	(14.5)	1,582	(15.8)	308	(3.1)	1,870	(18.6)	4,814	(48.0)	10,027	(100.0)
2015년	1,884	(16.1)	2,046	(17.5)	428	(3.7)	2,010	(17.2)	5,347	(45.6)	11,715	(100.0)
2016년	2,715	(14.5)	3,588	(19.2)	493	(2.6)	2,924	(15.6)	8,980	(48.0)	18,700	(100.0)
2017년	3,285	(14.7)	4,728	(21.1)	692	(3.1)	2,787	(12.5)	10,875	(48.6)	22,367	(100.0)
2018년	3,436	(14.0)	5,862	(23.8)	910	(3.7)	2,604	(10.6)	11,792	(47.9)	24,604	(100.0)



[그림 1-4-4] 연도별 아동학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매년 70% 이상 나타났다.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2014년 990건(9.9%)에서 2018년 3,906건(15.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 중 초·중·고교직원(6.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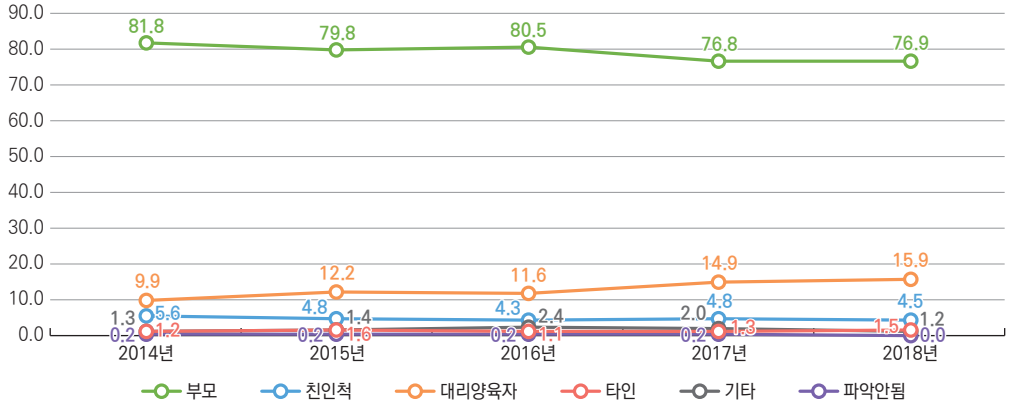
〈표 1-4-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계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부모	친부	4,531 (45.2)	5,368 (45.8)	8,295 (44.4)	9,562 (42.8)	10,747 (43.7)
	친모	3,211 (32.0)	3,475 (29.7)	5,923 (31.7)	6,824 (30.5)	7,337 (29.8)
	계부	189 (1.9)	236 (2.0)	394 (2.1)	401 (1.8)	480 (2.0)
	계모	242 (2.4)	237 (2.0)	362 (1.9)	341 (1.5)	297 (1.2)
	양부	17 (0.2)	17 (0.1)	37 (0.2)	28 (0.1)	36 (0.1)
	양모	17 (0.2)	15 (0.1)	37 (0.2)	21 (0.1)	22 (0.1)
	소계	8,207 (81.8)	9,348 (79.8)	15,048 (80.5)	17,177 (76.8)	18,919 (76.9)
친인척	친조부	69 (0.7)	96 (0.8)	111 (0.6)	128 (0.6)	147 (0.6)
	친조모	135 (1.3)	112 (1.0)	177 (0.9)	237 (1.1)	229 (0.9)
	외조부	17 (0.2)	28 (0.2)	39 (0.2)	61 (0.3)	74 (0.3)
	외조모	54 (0.5)	52 (0.4)	95 (0.5)	127 (0.6)	118 (0.5)
	친인척	229 (2.3)	201 (1.7)	266 (1.4)	328 (1.5)	352 (1.4)
	형제, 자매	55 (0.5)	73 (0.6)	107 (0.6)	186 (0.8)	194 (0.8)
	소계	559 (5.6)	562 (4.8)	795 (4.3)	1,067 (4.8)	1,114 (4.5)
대리양육자	부·모의 동거인	146 (1.5)	158 (1.3)	311 (1.7)	247 (1.1)	270 (1.1)
	유치원교직원	99 (1.0)	203 (1.7)	240 (1.3)	284 (1.3)	189 (0.8)
	초·중·고교 직원	145 (1.4)	234 (2.0)	576 (3.1)	1,345 (6.0)	2.060 (8.4)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80 (0.8)	64 (0.5)	167 (0.9)	217 (1.0)	176 (0.7)
	보육교직원	295 (2.9)	427 (3.6)	587 (3.1)	840 (3.8)	818 (3.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77 (1.8)	296 (2.5)	253 (1.4)	285 (1.3)	313 (1.3)
	기타시설 종사자	29 (0.3)	22 (0.2)	28 (0.1)	60 (0.3)	27 (0.1)

관계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대리양육자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	7 (0.1)	2 (0.0)	33 (0.1)	33 (0.1)
	위탁부	5 (0.0)	8 (0.1)	0 (0.0)	4 (0.0)	7 (0.0)
	위탁모	7 (0.0)	5 (0.0)	5 (0.0)	17 (0.1)	2 (0.0)
	베이비시터	7 (0.1)	7 (0.1)	4 (0.0)	15 (0.4)	11 (0.0)
	소계	990 (9.9)	1,431 (12.2)	2,173 (11.6)	3,343 (14.9)	3,906 (15.9)
타인	이웃	73 (0.7)	85 (0.7)	91 (0.5)	86 (0.4)	146 (0.6)
	낯선 사람	51 (0.5)	102 (0.9)	110 (0.6)	208 (0.9)	214 (0.9)
	소계	124 (1.2)	187 (1.6)	201 (1.1)	294 (1.3)	360 (1.5)
기타		129 (1.3)	166 (1.4)	454 (2.4)	440 (2.0)	305 (1.2)
파악불가		18 (0.2)	21 (0.2)	29 (0.2)	46 (0.2)	
계		10,027 (100.0)	11,715 (100.0)	18.700 (100.0)	22,367 (100.0)	24,604 (100.0)

※학대행위자 수감 및 조사거부, 정보부족 등의 경우 학대조사를 통한 정보 취득에 제한사항 발생하여 파악불가 값이 생길 수 있음.



[그림 1-4-5]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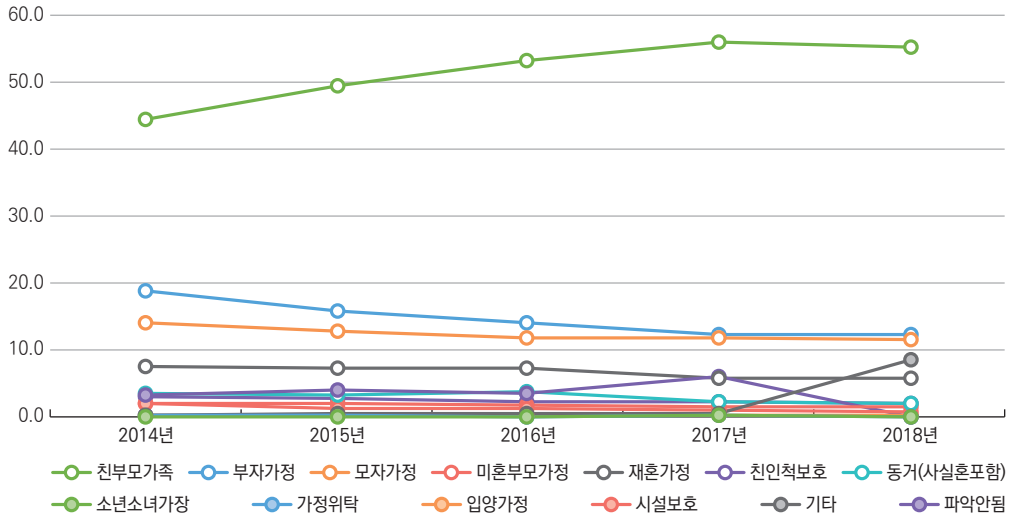
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친부모가족 형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3,546건(55.1%)까지 증가했다. 친부모 가족 외 형태의 경우 점차 감소하고 있다.

〈표 1-4-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 건, %)

가족유형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친부모가족		4,458 (44.5)	5,779 (49.3)	9,931 (53.1)	12,489 (55.8)	13,546 (55.1)
친부모 가족 외 형태	부자가정	1,887 (18.8)	1,855 (15.8)	2,623 (14.0)	2,732 (12.2)	2,997 (12.2)
	모자가정	1,414 (14.1)	1,483 (12.7)	2,203 (11.8)	2,632 (11.8)	2,865 (11.6)
	미혼부·모가정	208 (2.1)	240 (2.0)	347 (1.9)	361 (1.6)	404 (1.6)
	재혼가정	750 (7.5)	869 (7.4)	1,366 (7.3)	1,318 (5.9)	1,435 (5.8)
	친인척보호	297 (3.0)	320 (2.7)	444 (2.4)	487 (2.2)	483 (2.0)
	동거(사실혼포함)	353 (3.5)	403 (3.4)	688 (3.7)	532 (2.4)	490 (2.0)
	소년소녀가정	10 (0.1)	7 (0.1)	10 (0.1)	16 (0.2)	8 (0.0)
	소계	4,919 (49.1)	5,177 (44.2)	7,681 (41.1)	8,078 (36.1)	8,682 (35.3)
대리 양육 형태	가정위탁	24 (0.2)	31 (0.3)	28 (0.1)	38 (0.2)	27 (0.1)
	입양가정	39 (0.4)	34 (0.3)	79 (0.4)	56 (0.3)	44 (0.2)
	시설보호	208 (2.1)	155 (1.3)	227 (1.2)	218 (1.0)	187 (0.8)
	소계	271 (2.7)	220 (1.9)	334 (1.8)	311 (1.4)	258 (1.0)
기 타		43 (0.4)	58 (0.5)	86 (0.5)	137 (0.6)	2,118 (8.6)
파악안됨		336 (3.4)	481 (4.1)	668 (3.6)	1,352 (6.0)	-
계		10,027 (100.0)	11,715 (100.0)	18,700 (100.0)	22,367 (100.0)	24,604 (100.0)



[그림 1-4-6]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제2장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

제2장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

1. 아동학대 사망사례 현황

1) 아동학대 사망사례 현황

2018년에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28명이었으며,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 사례 중 약 0.1%를 차지하였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사망아동 통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된 아동학대사례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이며, 수사기관을 통한 신고 및 진행된 사건은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사망아동 사례 현황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2-1〉 아동학대 사망사례 발생 현황

(단위: 명, %)

연도	사망아동 인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명수 중 사망아동 명수 비율
2014	14	0.2
2015	16	0.2
2016	36	0.3
2017	38	0.2
2018	28	0.1

2.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피해아동

1)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일반적 특성

가. 사망사례 피해아동 성별

사망사례의 피해아동 성별의 경우, 남아가 15명(53.6%), 여아가 13명(46.4%)으로 남아가 더욱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2-2〉 사망사례 피해아동 성별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피해아동	
		인원	비율
피해아동 성별	남아	15	53.6
	여아	13	46.4
총계		28	100.0

나. 사망사례 피해아동 연령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연령의 경우, 만 1세 미만이 10명(35.7%)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1세가 8명(28.6%), 만 4세와 5세, 7세가 각각 2명(7.1%) 순으로 나타났다.

*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 결과의 경우 2018년 아동학대 현황통계 시스템 마감(2019. 5.) 이후인 2019. 8. 확인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임

〈표 2-3〉 사망사례 피해아동 연령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피해아동	
		인원	비율
피해아동 연령(만)	1세 미만	10	35.7
	1세	8	28.6
	4세	2	7.1
	5세	2	7.1
	6세	1	3.6
	7세	2	7.1
	8세	1	3.6
	9세	2	7.1
총계		28	100.0

다. 사망사례 피해아동 교육기관

사망아동이 참여한 교육기관의 경우 다니지 않은 아동이 53.6%(1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17.9%(5명), 초등학교 17.9%(5명), 유치원 7.1%(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망아동이 영유아기(0-6세)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4〉 사망사례 피해아동 교육기관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피해아동	
		인원	비율
피해아동 교육기관	다니지 않음	15	53.6
	어린이집	5	17.9
	유치원	2	7.1
	초등학교	5	17.9
	기타(자료 없음 등)*	1	3.6
총계		28	100.0

2)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환경적 특성

가. 사망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은 친부모가정이 64.3%(18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모자가정이 14.3%(4명), 미혼부모가정 10.7%(3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2-5〉 사망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피해아동	
		인원	비율
피해아동 가족유형	친부모가정	18	64.3
	부자가정	1	3.6
	모자가정	4	14.3
	미혼부모가정	3	10.7
	동거(사실혼 포함)	2	7.1
총계		28	100.0

나. 사망사례 피해아동 가구소득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가구소득은 소득 없음이 35.7%(10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었다. 피해아동 가구소득의 경우 재판 중 등의 이유로 해당 자료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 자료 확인이 가능한 사례 중에서는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이 각각 3명(10.7%)으로 나타났다.

〈표 2-6〉 사망사례 피해아동 가구소득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피해아동	
		인원	비율
피해아동 가구소득	소득 없음	10	35.7
	50만원 미만	1	3.6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	3.6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3	10.7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0	0.0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1	3.6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0	0.0
	300만원 이상	3	10.7
	기타(자료 없음 등)*	9	32.1
총계		28	100.0

다. 사망사례 피해아동 국적 및 다문화가족 여부

사망아동의 내국인 여부에서 사망아동은 모두 내국인이었으며, 다문화가족여부를 살펴보면 사망아동은 모두 다문화가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7〉 사망사례 피해아동 국적 및 다문화가족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피해아동	
		인원	비율
피해아동 내국인여부	내국인	28	100.0
피해아동 귀화여부	해당 없음	28	100.0
피해아동 다문화가족 여부	일반	28	100.0

3.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학대행위자

1)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의 일반적 특성

가.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의 경우, 총 30명의 학대행위자 중 남성은 10명(33.3%), 여성은 20명(66.7%)으로 나타났다.

〈표 2-8〉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성별	남성	10	33.3
	여성	20	66.7
	총계	30	100.0

나.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연령은 20대가 14명(46.7%)로 가장 많았으며, 30대에 8명(26.7%), 40대에 6명(20.0%), 19세 이하와 50대 각각 1건(3.3%) 순으로 보고되었다.

〈표 2-9〉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학대행위자 연령(만)	19세 이하	1	3.3
	20대(20세~29세)	14	46.7
	30대(30세~39세)	8	26.7
	40대(40세~49세)	6	20.0
	50대(50세~59세)	1	3.3
	계	30	100.0

다.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최종학력

학대행위자의 최종학력의 경우 재판 중 등의 이유로 자료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파악 가능한 자료에 한해서는 고등졸업과 대학졸업이 각각 5명(16.7%)으로 많게 나타났다.

〈표 2-10〉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최종학력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학대행위자 최종학력	중등중퇴	2	6.7
	중등졸업	2	6.7
	고등중퇴	2	6.7
	고등졸업	5	16.7
	대학졸업	5	16.7
	대학원졸업	1	3.3
	기타(자료 없음 등)*	13	43.3
총계		30	100.0

라.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의 경우 무직이 40.0%(16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부가 16.7%(5명)으로 높게 보고되었다.

〈표 2-11〉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군인	2	6.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	3.3
	단순노무종사자	2	6.7
	무직	12	40.0
	비정규직	1	3.3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1	3.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3	10.0
	자영업	1	3.3
	회사원	1	3.3
	주부	5	16.7
	기타(자료 없음 등)**	1	3.3
총계		30	100.0

* 피의자 사망, 재판중 등으로 해당자료 확인 어려움
** 피의자 사망, 재판중 등으로 해당자료 확인 어려움

2)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의 환경적 특성

가.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가구소득

사망아동의 학대행위자의 경우 재판 중 등의 이유로 해당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11명(36.7%)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소득 없음이 그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7명, 23.3%)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서 살펴본 학대행위자 직업유형에 무직 및 주부가 집중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2-12〉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가구소득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학대행위자 가구소득	소득 없음	7	23.3
	50만원 미만	1	3.3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	3.3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4	13.3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0	0.0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1	3.3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0	0.0
	300만원 이상	5	16.7
	기타(자료 없음 등)*	11	36.7
총계		30	100.0

나.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국적 및 다문화가족 여부

학대행위자의 경우 모두 내국인이었으며, 귀화 이력 및 다문화가족인 경우도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2-13〉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국적 및 다문화가족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학대행위자 내국인여부	내국인	30	100
학대행위자 귀화여부	해당 없음	30	100
학대행위자 다문화가족여부	일반	30	100

* 피의자 사망, 재판중 등으로 해당자료 확인 어려움

4. 아동학대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동거여부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를 살펴볼 경우, 피해아동과 동거를 하고 있었던 학대행위자가 19명(63.3%)으로 비동거하고 있었던 11명(33.3%)에 비해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표 2-14〉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동거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동거 유형	동거	19	63.3
	비동거	11	33.3
총계		30	100.0

2)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사망사례 피해아동을 학대했던 행위자에는 친모(53.3%, 16명)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친부(30.0%, 9명)가 많아 아동 사망 전 친부모에 의한 학대행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는 보육교직원(어린이집 종사자)이 10.0%(4명)로 나타났다.

〈표 2-15〉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명, %)

관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부모	친부	9	30.0
	친모	16	53.3
	소계	25	83.3
친인척		1	3.3
대리양육자	보육교직원	3	10.0
	베이비시터(아이돌보미)	1	3.3
	소계	4	13.3
계		30	100.0

5. 아동학대 사망사례 발생현황

1) 사망사례 지역별 발생현황

지역별 사망사례 발생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경기도와 서울에서 각각 5명(17.9%)의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하였다. 다음으로는 경상북도(4명, 14.3%)에 많은 사망사례가 발생하였으며, 경상남도와 충청북도가 3명(10.7%)로 그 뒤를 이었다.

〈표 2-16〉 사망사례 지역별 발생현황

(단위: 명, %)

구분		아동	
		인원	비율
시도명	강원도	1	3.6
	경기도	5	17.9
	경상남도	3	10.7
	경상북도	4	14.3
	대구광역시	2	7.1
	서울특별시	5	17.9
	인천광역시	1	3.6
	전라남도	2	7.1
	전라북도	1	3.6
	충청남도	1	3.6
	충청북도	3	10.7
총계		28	100.0

2) 사망사례 신고자 유형

사망사례의 비신고의무자 신고율이 67.9%로 신고의무자 신고율(32.1%)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학대 신고자 유형에서도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이 높은 것(2018년 비신고의무자 신고비율: 72.7%)과 맥을 같이 한다.

〈표 2-17〉 사망사례 신고자 유형

(단위: 명, %)

구분		아동	
		인원	비율
신고자 유형	신고의무자	9	32.1
	비신고의무자	19	67.9
총계		28	100.0

6. 사망사례의 아동학대 유형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사망에 이르기까지 행한 학대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신체학대가 53.3%(16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방임(30.0%, 9명), 방임·신체학대(4명, 13.3%) 순으로 나타나 사망아동이 취약한 학대 유형이 신체 및 방임이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18〉 사망사례의 아동학대 유형

(단위: 명, %)

구분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신체		16	53.3
방임		9	30.0
중복학대	신체·방임	4	13.3
	신체·정서	1	3.3
총계		30	100.0

7. 아동학대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재판 결과

1)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재판 결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재판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직 재판 중으로 정확한 결과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11명, 36.7%), 파악 가능한 자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던 것은 1년 초과-5년 이하의 양형(7명, 23.3%)을 받게 된 경우이다. 그 다음으로는 집행유예(3명, 10.0%)가 많았다. 10년 초과-15년 이하와 5년 초과-10년 이하, 내사종결 된 경우가 각각 2명(6.7%)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높은 형을 받은 경우는 15년을 초과하여 받은(25년 형) 1명이었다.

〈표 2-19〉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재판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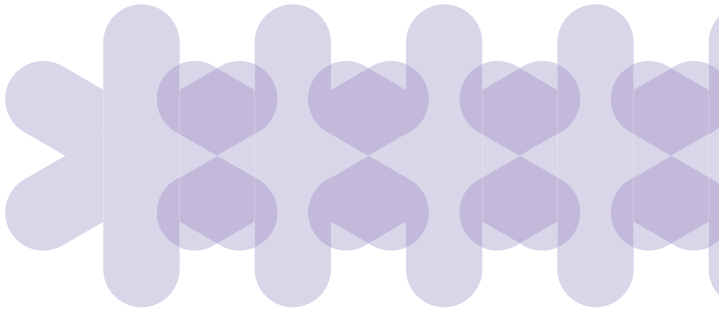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집행유예		3	10.0
양형	1년 이하	1	3.3
	1년 초과-5년 이하	7	23.3
	5년 초과-10년 이하	2	6.7
	10년 초과-15년 이하	2	6.7
	15년 초과(25년)	1	3.3
재판 중		11	36.7
내사종결		2	6.7
수사 중		1	3.3
총계		30	100.0

* 2019. 8. 12. 확정된 재판 기준



부 록



부록

1. 용어 설명

[신고접수]

-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재학대 : 재학대는 최근 5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에 신고접수 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다시 기준연도에 신고접수 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 아동보호전문기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개정(안)(2019.7.16. 시행)에 존립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폐관됨. 이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명칭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폐관 전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였음. 아동보호전문기관(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및 개입 등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함(아동복지법 제46조).
- 신고접수(사례) : 상담 및 신고 목적으로 접수된 모든 사례.
- 112 :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신고 번호이며,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신고번호가 112로 통합 운영됨. 신고접수 받은 뒤 현장 경찰관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사실 통보 및 동행요청을 함.
- 1577-1391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신고받기 위해 설치한 전화로 24시간 동안 운영되었으나 2014년 9월 29일 이후부터 112로 아동학대신고전화가 통합되면서 폐지되었음.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원할 시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설치된 일반전화를 통해 신고접수 함.
- 내방신고 : 신고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 인터넷 신고 : 신고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
- 119 : 119 안전신고센터에서 운영하는 전화로, 아동학대 사건 제보가 들어올 경우 해당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속하게 유선 통보.
- 129 : 보건복지콜센터. 보건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하여 운영. 보건복지콜센터는 112로부터 아동학대 사례 관련 상담 전화가 이관되면 이에 대해 응대하고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유선 통보함. 보건복지콜센터에 아동학대 사건 제보가 들어왔을 시 긴급 현장 출동이 필요시 되는 사건일 경우 상담원은 제보자에게 112로 신고할 것을 권고함. 제보자가 이에 거부적일 경우 상담원이 직접 가급적 상세한 정보를 입수하여 해당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속하게 유선 통보함.
- 1366 : 여성긴급전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 상담과 구조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여성 혹은 동반가족들이 365일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
-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제1조).
- 피해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제8호) 혹은 아동학대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아동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6항).
- (아동)학대행위자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에 따라 아동을 가해한 자.
-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 신고접수 당시 응급한 아동학대 상황으로 의심되며,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

- 아동학대의심사례 : 신고접수 당시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가운데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 해당 사례들은 신고접수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함.
- 일반상담(사례)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된 사례 중 아동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성인이 아닌 자에 의해 발생한 사례, 아동학대가 의심되지만 정보 부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사례.
- 동일신고(사례) : 최초 신고접수 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례와 동일한 학대피해의심내용이 다른 신고자들에 의해 신고접수 되는 사례.
- 재신고(사례) : 최초 신고접수 이후에 동일한 학대행위자에 의해 동일한 피해아동에게 추가적인 학대가 발생한 사례를 말함.
- 사례종결 후 재신고(사례)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 후 종결했던 사례 중 다시 신고접수 된 사례로 어느 기관에 신고접수 된 사례인지에 관계없이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 되어 개입 후 종결한 사례 중 다시 신고접수 된 모든 사례를 말함.
- 사례진행 중 재신고(사례)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접수 하여 현장조사 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하여 개입 중인 사례에 대해 다시 신고접수 된 사례 또는 응급아동학대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접수 하였으나 사례판단 이전에 동일 또는 다수의 신고자에 의해 또 다른 학대행위의심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신고접수 된 사례.
- 일반상담 후 재신고(사례) : 신고접수 당시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지 않아 일반상담으로 종결하였으나 다시 신고접수 된 사례.
-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가진 자로 신고의무자에는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강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아이돌보미 등 24개 직군이 포함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 비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

[아동학대조사 및 사례판단]

- 아동학대조사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된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하여 학대 발생 여부와 위험 정도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조사 방법에는 전화, 내방, 방문조사가 있음. 2018년 이전 '현장조사'로 지칭하던 용어는 시스템 개편과 함께 '아동학대조사'로 변경하게 됨.
- 사례판단 : 아동학대조사를 통해 수집된 아동학대사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로 분류 및 결정하는 과정.
-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 : 현장조사 시 또는 현장조사 이후 상담원 및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척도이며, 이를 통해 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
- (자체)사례회의 : 사례판단과 사례개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장, 팀장, 상담원이 구성원으로 모여 진행하는 회의.
-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의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를 둠. 구성원으로는 아동학대 담당공무원, 의사, 경찰관, 법조인 등 각계 전문가가 있음(아동복지법 제46조의2).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의는 본 위원회가 아동학대 사례판단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가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에 대해 판단 및 개입방향을 논의하고자 진행하는 회의.
- 아동학대사례 : 사례판단 유형 중 하나로 학대의 정황이 뚜렷하고 아동학대로 판단할 만한 증거 또는 진술이 뒷받침 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 잠재위험사례 및 조기지원사례 : 사례판단 유형 중 하나로 아동학대혐의가 없으나 고위험군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외부지원이 필요한 사례. 2013년까지는 잠재위험사례, 2014년부터는 조기지원사례라는 용어로 사용됨.

- 일반사례 : 사례판단 유형 중 하나로 신고접수 시 아동학대의심사례로 판단하였으나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
- 친부모가족 : 적법한 혼인절차에 의한 부모와 부모 사이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 부자·모자 가정 : 부모의 이혼 및 사별 등의 사유로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 미혼부·모 가정 : 적법한 혼인절차 없이 자녀를 출산하여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 재혼 가정 : 이혼 혹은 사별 이후 혼인관계를 통해 재구성된 가족 형태.
- 친인척보호가정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별거 및 이혼한 일방의 부 또는 모에게 보호되는 가족 형태.
- 동거(사실혼 포함) 가정 : 적법한 혼인절차 없이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가족 형태.
- 소년소녀가정 : 보호자 없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가족 형태.
- 가정위탁 : 가정위탁절차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하는 형태.
- 입양가정 : 입양절차를 통해 양부모-양자의 관계를 맺은 가족 형태.
- 시설보호 : 보호조치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형태.
-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 계부·계모 : 재혼을 통하여 맺어진 부 또는 모.
- 양부·양모 : 입양절차를 통해 맺어진 부 또는 모.
- 위탁부·위탁모 : 가정위탁절차를 통해 맺어진 부 또는 모.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림, 물건을 던짐, 꼬집거나 물어뜯음, 신체 일부를 강압적으로 압박하거나 아동을 던지는 행위 등이 포함됨.
-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소리 지름, 무시 또는 모욕, 가정폭력에 노출,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함. 성기노출, 신체 및 성기 추행, 성기삽입,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 방임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처리를 하지 않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이 포함됨.
- 유기*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2012년부터는 유기를 방임에 포함하여 집계함
- 중복학대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형의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

[조치결과관리]

- 조치결과 : 사례판단을 근거로 피해아동의 안전 및 회복과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결정을 취하는 것.
- 응급조치 : 아동학대범죄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현장을 발견한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
- 임시조치 :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로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하는 조치.
- 제 14조 임시조치 :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와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이나 보호관찰관의 청구신청 또는 피해아동 본인·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피해아동의 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청구요청 및 청구신청요청에 따라 검사가 청구할 수 있음.
- 제 15조 임시조치 :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후속절차로써 필요적으로 청구함.
- 긴급임시조치 : 응급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할 때 경찰의 직권이나 피해아동 본인·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피해아동의 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긴급하게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취하는 조치.
- 피해아동보호명령 :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아동·법정대리인·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직접 가정법원에 아동의 보호를 청구하는 제도.
- 임시보호명령 :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의 결정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전까지 임시로 피해아동보호명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52조).
- 원가정보호 : 생물학적·법적 친권자 및 양육권자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양육하는 주양육자가 아동을 보호하는 형태.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에 따라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 분리·격리보호 : 피해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
- 일시보호 :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친족, 연고자 또는 위탁양육자가 없어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일시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
- 장기보호 :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 보호가 필요하여 아동양육시설로 입소하는 것.
- 기타보호 : 피해아동을 분리한 이후 친인척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가정위탁을 제외한 병원 입원 등의 보호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것.
- 가정복귀 : 아동학대로 분리보호된 아동을 다시 원가정으로 배치하는 것.
- 사망사례 :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
- 타기관의뢰 : 사례를 담당하기에 더욱 적절한 관련 기관으로 사례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을 의미함.
- 지속관찰 : 아동 안전 확보 및 재학대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
- 고소 : 범죄 피해자 및 그의 법정 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고발 :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사건처리 : 고소, 고발, 인지수사, 특례법 임시조치 등 수사진행 및 수사 미진행 모두를 포함한 아동학대 사법절차를 의미함.
- 보호처분 : 사회보호 및 특별 예방적 목적으로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교육, 개선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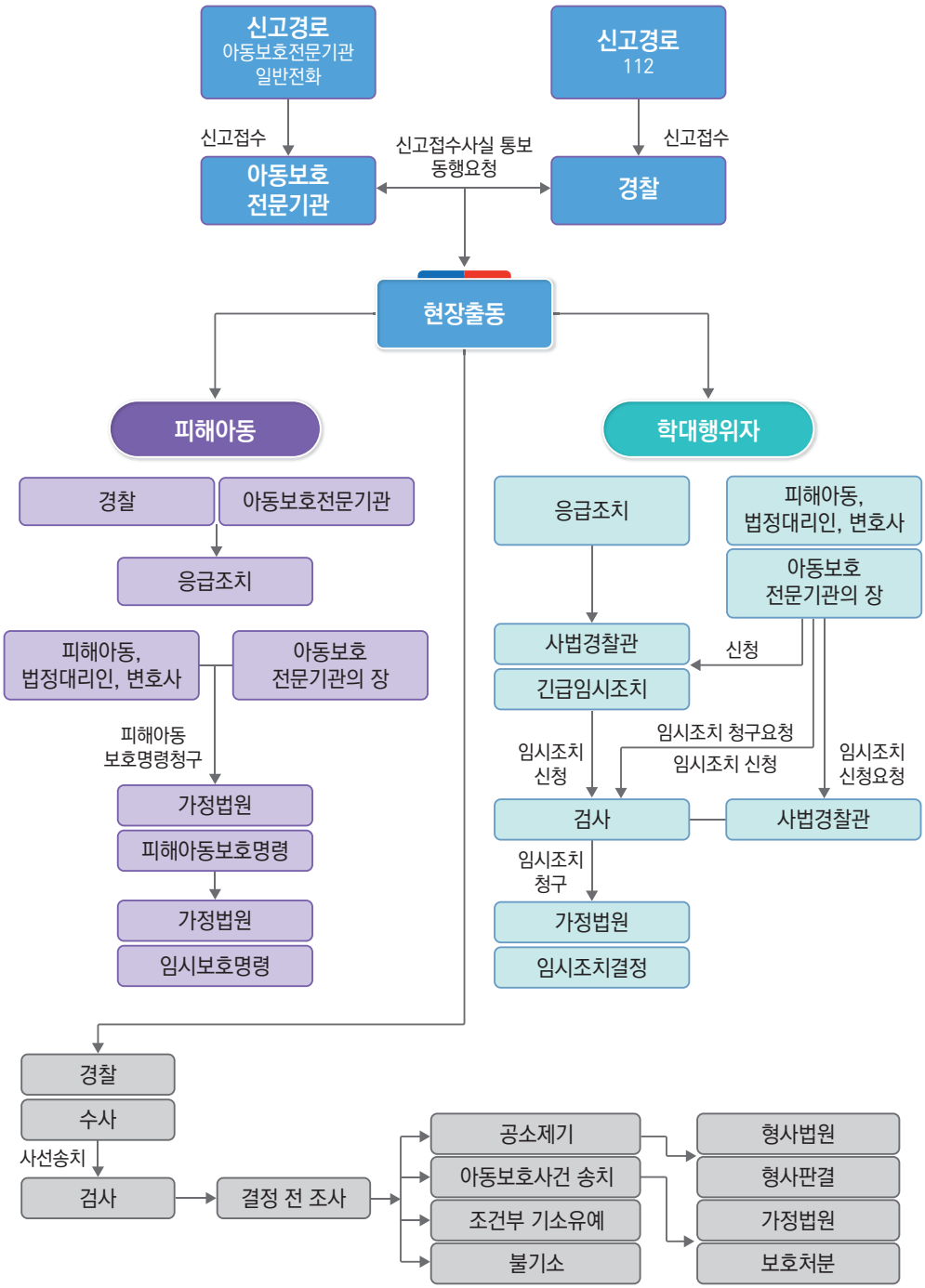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가하는 보안처분의 일종.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치료감호 등을 부과하는 것.

- 형사처분 : 범죄를 이유로 하여 형벌 즉 구류, 금고, 징역 등을 부과하는 것.

[서비스제공]

- 상담서비스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과의 개별적인 상담서비스,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집단을 이루어 상담을 하는 집단상담서비스,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기관, 병원 등 다른 기관과 실시한 기관상담서비스,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을 위해 주변인과 실시한 상담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 입원치료 : 피해아동이 신체적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와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이 정신질환, 알콜 및 약물남용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를 말함.
- 통원치료 : 피해아동의 신체적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외래진료를 한 경우와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의 신체적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외래진료를 한 경우를 말함.
- 심리검사 : 심리학적 평가 및 진단을 위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실시.
- 놀이치료 : 놀이를 통해 피해아동 또는 가족에게 실시하는 심리치료를 의미함.
- 미술치료 : 미술활동을 통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실시하는 심리치료를 의미함.
- 가족치료 : 개인을 둘러싼 환경 요소 중 특히 가족을 치료적 매개로 사용하여 피해아동 가정에 실시하는 심리치료를 의미함.
- 기타치료 : 놀이치료, 미술치료, 가족치료를 제외한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실시한 구조화된 심리치료를 의미함.
- 가정지원서비스 : 피해아동 가정 또는 학대행위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상담소 등)을 연계하여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을 의미함.
- 공적지원연결 :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해 공적지원(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연결.
- 학습 및 보호지원서비스 : 학대피해아동쉼터 입퇴소 및 절차지원,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 및 절차지원, 출결 및 비밀전학 처리 지원을 포함하는 서비스.
- 사건처리지원서비스 : 학대행위자가 고소·고발 또는 응급조치에 따른 수사개시 등으로 사건처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 또는 재판진행과정에서 피해아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
- 행위자수탁프로그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임시조치 또는 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결정을 받아 검찰·법원으로부터 상담·교육 위탁 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 사례종결 : 사례개입을 마무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피해아동 및 가족의 관계를 정리하여 최종적인 서비스 종결에 이르게 하는 것.
- 사후관리 : 사례종결 이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재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함. 재학대 예방과 가족의 안정 유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에게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것.

2.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발 행 일 2019년 8월

발 행 인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편 집 위 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심의선, 이지연, 변용희, 최윤희

발 행 기 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편 집 기 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Tel: 02-558-1391)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44-867-7633)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